

2011년 한국치안행정학회 통계학술세미나

# 이명박 정부 치안정책의 평가와 과제

- 일시 : 2012년 2월 10일(금)
- 장소 : 대구한의대학교 경산캠퍼스 학술정보관 619호
- 주최 : 한국치안행정학회
- 주관 :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후원 : 대구은행, JBS 경찰학원, 대구한의대학교,  
도서출판 메티스, (주)가드포유





## 개회사

---

존경하는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

그리고 치안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참석자 여러분 !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대학 및 직장에 행운과 웃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치안행정학회는 명실공히 국가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슈를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연구하는 학술단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을 연구하는 관련학회들과 상호협력과 여러 차례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통섭/융합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11년 한해는 실로 의미있는 학술세미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정부학회, 대한지방자치학회, 국가위기관리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등과 공동학술세미나와 협력 세미나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토대학에서 국제위기관리 학술세미나를 한국치안행정학회와 국가위기관리학회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안전대책 세미나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한국치안행정학회 단독으로 개최하여 국제스포츠행사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아울러 안전대책의 대안을 제시하여 많은 안전대책 관계기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장과의 간담회,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교육원, 한국경비협회, 한국경비지도사협회 등과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상생, 소통, 교류 등의 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한국경비협회와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이인기의원 초청세미나, 심층회의 등을 통해서 민간경비 자격증 제도 발전방안, 신변보호사 제도의 공인화 문제 등 경찰행정학과와 경호학과 학생들의 진로 및 민간경비 산업 발전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2012년 2월 10일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성제 총무위원장과 백석기 홍보이사, 조성구 사무국장, 안재석 정보이사 등 임원진들은 홈 페이지와 이 메일 등을 통해서 작년 11월부터 학술세미나의 대주제 공모, 발표자 및 사회자, 토론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많은 신청자가 계셨지만, 오늘의 대주제에 맞는 주제들만 선정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청해주신 모든 교수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세미나의 대주제는 <이명박 정부 치안정책의 평가와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오신 여러 교수님들, 경찰 및 소방, 교정, 민간경비 실무자들이 참석하십니다.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오늘 발표하시는 주제 중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치안정책에 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과 플로어의 열띤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학회의 생명은 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발전을 위한 제언 부탁드립니다.

회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학문적 성취를 기원합니다.

2012. 2. 10.

한국치안행정학회장 박 동 균



존경하는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대학에서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가 개최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에 오신 여러 회원님들을 환영합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전통과 첨단 의 융합 대학으로 새로운 날개를 펴고 응비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대구한의대학교”,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 속에서 주목받는 전문 인재 양성”, “한방 바이오 산업의 세계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한의대학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계학술세미나에서 ‘이명박 정부 치안정책의 평가와 과제’의 주제로 이명박 정부의 치안정책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점을 제시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치안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회의 노력은 앞으로 대한민국 치안행정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학술대회 개최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한국치안행정학회 박동균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과 옥고를 발표해 주시고, 또한 토론해 주실 교수님 등 참석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건승과 크나큰 학문적 성취가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2. 10.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이준구





## 축 사

---

존경하는 학회회원 및 내외빈 여러분 !

이제 올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아직 차가운데, 경북 경산의 아름다운 대구한의대학교 캠퍼스에서 성대하게 개최되는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이명박 정부 치안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금껏 시행해 온 이명박 정부의 치안행정과 그 정책을 점검해 보고, 아울러 미래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연구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 자리에서는 여러 교수님들의 경찰행정 및 민간경비 등의 주옥같은 훌륭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아울러 학술 세미나의 맨 마지막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용인대학교 이상철 교수님의 주제로 전국에서 온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보다 나은 치안정책의 방향과 현실적인 안전사회 구축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연구발표와 논의는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치안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뜻 깊은 학술의 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치안행정학회는 여기에 계신 박동균 학회장님을 중심으로 응집력있게 연구 및 봉사활동을 하는 약 400여명의 전국회원을 갖고 있는 전국규모의 명품학회입니다.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학문적 토양이 척박한 지방에서 뜻있는 학자들이 모여 학회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이 어제 같은데,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 번 박동균 학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치안행정학회가 대한민국 치안행정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선구적인 학회활동을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학회에서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교수님들의 학문적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며,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구한의대학교 이준구 총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2. 2. 10.

한국경비지도사협회장 이 광 희





# 2011년 한국치안행정학회 동계학술세미나

■ 11:30 ~ 12:30 **이사회**

■ 12:30 ~ 01:30 **접수 및 등록 : 학술정보관 619호**

■ 01:30 ~ 01:50 **개회식**

전체사회 : 조성제(총무위원장, 대구한의대)

- **개회사** 박 동 균(한국치안행정학회장)
- **환영사** 이 준 구(대구한의대학교 총장)
- 축사** 이 광 희(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 신 현 기(한국자치경찰학회장)
- **기념촬영**

■ 02:00 ~ 05:00 **세미나**

세미나 진행사회 : 김태민(편집이사, 경운대)

사회 : 허원구(대구과학대)

**발표 1** 신성원(대구한의대)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PTSD 비교 분석**

**토론** : 김용태(경일대), 장철영(대구외국어대), 김우준(세명대),  
강용석(대구미래대)

사회 : 조성택(선문대)

**발표 2** 남재성(원주한라대)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변화양상 분석**

**토론** : 홍태경(가야대), 정병수(대불대), 박영주(영남이공대),  
최인규(대구과학대)

사회 : 박역종(국민대)

**발표 3** 신현기(한세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에 관한 평가**

**토 론** : 이상열(한국복지사이버대), 곽영길(청양대), 양경규(계명문화대),  
신승균(영산대)

사회 : 조두원(경일대)

**발표 4.** 김학범(세명대)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 향상 방안**

**토 론** : 이정훈(안동과학대), 정신교(김천대), 백석기(경북과학대),  
이효민(영산대)

■ **ROUND TABLE**

사회 : 이상철(용인대)

**발표자.** 박주상(대구예술대)

**이명박 정부의 치안정책의 현황 및 과제**

**발표자.** 박동균(한국치안행정학회장, 대구한의대)

**치안행정의 연구윤리**

**토 론** : 김철성(대구산업정보대), 조동운(경찰교육원),  
이진갑(패트롤 맘 대구지부장), 류준혁(대구가톨릭대),  
박기범(동아대), 이강문(대구예술대)

■ 05:00 ~ 05:30 **정기총회**

■ 05:30 ~ 07:30 **만찬**



# 목 차

## ● 발표 1 ●

-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PTSD 비교 분석 ..... 1  
신성원(대구한의대)

## ● 발표 2 ●

-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변화양상 분석 ..... 21  
남재성(원주한라대)

## ● 발표 3 ●

-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에 관한 평가 ..... 43  
신현기(한세대)

## ● 발표 4 ●

-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 향상 방안 ..... 59  
김학범(세명대)

## ● 발표 5 ●

- 이명박 정부의 치안정책의 현황 및 과제 ..... 87  
박주상(대구예술대)

## ● 발표 6 ●

- 치안행정의 연구윤리 ..... 97  
박동균(한국치안행정학회, 대구한의대)





# 발표 1



#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PTSD 비교 분석

신 성 원(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PTSD 수준 |
| II. PTSD의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경찰공무원과 PTSD |                           |

## I. 서 론

전쟁,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성폭행 등과 같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손상위험을 주는 극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외상(trauma)이라고 하며, 이러한 외상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정신적·신체적 증상들을 총체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라고 한다(신성원, 2007: 3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주로 베트남 전쟁 이후 전쟁피해자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어왔다. 최근에는 연구대상에 천재지변,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간, 인질, 조직폭력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특징은 예측이 어렵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손상을 입히며,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다(유양숙, 1997: 225-274).

자연재해나 인재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의 종류, 발생 지역, 평가 대상, 평가 시점 등에 따라 다양하지만 최소한 일반인의 약 10% 이상이 일생 동안 재해에 해당되는 외상적 사건에 노출된다고 한다(Green & Lindy, 1994: 301-309).

최근 국내에서는 태안 기름유출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피해 주민들과 구제역 사태 이후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농장주 등 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이는 과거에는 어지간한 고통에 대해서는 혼자서 인내하는 것이 사회적 미덕이었으나, 요새는 개인적·사회적 고통을 단순히 감내하기 보다는 표현·표출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경찰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경찰공무원 집단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취약한지에 대한 탐색 역시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실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경찰공무원 채용·인사교육 등의 분야에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PTSD의 이론적 배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손상위험을 주는 극심한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외상(trauma)이라고 하는데, 외상은 공포, 불안, 긴장, 흥분, 탈진감, 무기력 등의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초래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는 개인이 극도로 심각한 외상 사건을 직접 보거나, 듣거나 또는 경험한 이후에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는 증후군으로 극한의 위협적 상황에 대한 노출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기능의 파괴적인 영향을 의미한다(전유진, 2009: 5-6).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는 외상사건의 유형에는 전쟁,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강제적 구속, 건축물 붕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등이 있다(주혜선, 2008). 또한, 외상사건은 자연재해와 인위적 사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재해보다 인위적 사건 같은 인재를 경험한 사람이 장기적·만성적인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있다(Slaikou, 199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으로는 미국 심리학회의 진단 및 통계위원회가 1994년 발간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 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V : DSM-IV)이 주로 사용된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이 진단기준표는 진단기준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진단기준 A는 PTSD의 본



질이라고 할 수 있는 외상 및 외상적 사건의 정의, 외상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보여준다. 진단기준 B에서 D까지는 PTSD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임상적 특징들이 제시된다. 따라서 이 부분은 PTSD 증상을 이해하는 핵심부분이다. 그리고 진단기준 E 이하는 PTSD의 경과와 하위 유형을 제시한다. 하위 유형은 장애의 지속 기간과 발생시기를 근거로 나눈 것이다(홍종관 외, 2005: 140-141).

<표 1>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의 진단기준(DSM-IV)

<p>A. 다음의 두 가지 요소에 외상성 사건에 노출된 경우</p> <p>(1)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거나 직면하였을 때</p> <p>(2) 개인의 반응에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이 동반될 때. 아동의 경우에는 머뭇거리는 행동이나 비조식적인 행동을 보인다.</p>
<p>B. 외상적 사건을 다음 방식들 중 한 가지(또는 그 이상으로)로 지속적으로 재경험하는 경우</p> <p>(1) 사건에 대한 반복적이고 침투적인 고통스러운 회상(이미지, 생각, 지각 등을 포함). 아동의 경우 외상의 주제나 상황이 표현된 놀이를 반복적으로 한다.</p> <p>(2)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꿈이 반복됨. 아동의 경우 내용을 알 수 없는 깜짝 놀라는/무서운 꿈을 꾸기도 한다.</p> <p>(3) 마치 외상적 사건이 재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느낌(사건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감각, 착각, 환각, 해리적인 환각 재현의 삽화들이 포함되고, 이런 경험은 잠에서 깨어날 때 혹은 중독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포함한다). 아동의 경우 그 외상에 해당하는 특수한 재연이 일어날 수 있다.</p> <p>(4)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상징하는 내적/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강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낌</p> <p>(5) 외상적 사건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상징하는 내적 또는 외적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의 생리적 재반응</p>
<p>C. 외상과 연관된 자극을 계속 회피하려고 하거나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외상 전에는 없었던)가 다음 중 세 가지 이상 보일 때</p> <p>(1) 외상과 관련되는 생각, 느낌, 대화를 피하려 한다.</p> <p>(2) 외상이 회상되는 행동, 장소, 사람을 피하려 한다.</p> <p>(3) 외상의 중요한 부분을 회상할 수 없다.</p> <p>(4) 중요한 활동에 흥미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p> <p>(5) 타인으로부터 소원해지거나 분리되는 느낌</p> <p>(6) 정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예 :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p> <p>(7) 미래가 단축된 느낌(예 : 직업, 결혼, 자녀, 정상적인 삶을 기대하지 않음)</p>

D. 증가된 각성반응의 지속적 증상(외상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이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보일 때 (1) 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계속 자기 어려움 (2) 과민함 또는 분노의 폭발 (3) 집중의 어려움 (4) 과도한 경계 (5) 과도한 놀람반응
E. 장애(진단기준 B, C, D의 증상)가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F. 장애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손상을 초래한 경우

자료: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199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위의 <표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외상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재경험하게 되는 침습적 증상, 회피와 무감각 증상, 지나친 각성 증상 등의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들이 상호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우울, 불안 등의 2차적 증상이 나타나고, 자신만 생존했다는 사실과 살아남기 위해 했던 행위들에 대하여 죄의식을 많이 느끼며, 외상 사건과 유사한 활동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로 회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인관계를 방해하고, 배우자와의 갈등, 이혼, 부적응, 실직 등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전유진, 2009: 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대한 연구는 1970-80년대에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원인을 주로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 보았으나, 베트남 전 참전 군인들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원인에 있어서 피해자의 외상적 본질에 더 많은 초점을 두기 시작하였다(배점모, 2010: 19-20).

### III. 경찰공무원과 PTSD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자신의 신체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는 1차적 외상사건과 교통사고, 사망·폭행 피해자의 목격 같은 2차적 외상사건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Carlier et al., 2000; Petterson, 2000). 이러한 외상사건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과각성, 불안, 인지적 회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다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의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Carlier et al., 1997).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들에 의하면 위급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공무원 중 상당수가 심각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며, 사기, 장기 결근, 직업적 건강, 조기 퇴직,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원, 2011a: 267).

Violanti(2003)에 따르면 특정 외상사건에 노출되는 것은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알코올 사용과 자살충동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aton et. al., 2009).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배우자도 28.2%가 2차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인 배우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도가 심각할수록 배우자의 2차적 외상후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Dwyer, 2005).

Carlier 등에 따르면 위급상황에 노출되었던 경찰공무원들 중 7%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노출되었으며, 34%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rlier et al., 1997: 498-506).

뉴욕시 인근 남성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4.8%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노출되었으며, 28.6%는 부분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wyer, 2005). 오하이오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전체 경찰공무원 중 13%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nson et al., 1997: 835-845).

Robinson 등에 따르면 교외 경찰공무원의 13%가 사기, 장기 결근, 직업적 건강, 조기 퇴직, 가족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Green, 2004: 101). Kroes 등에 의하면, 경찰공무원들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사건들로부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 중 60%는 위기상황에 의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응답하였다(Kroes et al., 1974: 145-155).

Spielberger 등에 따르면 경찰공무원들에게 60가지 문항과 관련되어있는 스트레스의 양을 배열하도록 질문하였는데 최상위의 3가지 항목에는 “근무 중 동료경찰공무원이 살해되었을 때”, “직무수행 중 누군가를 살해하였을 때”, “학대받거나 살해당한 아이를 발견한 경우”가 선택되었다(Spielberger et al., 1981).

한편, 외상사건 이외의 요인들 특히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다.

성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여성 경찰공무원이 남성 경찰공무원보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데(Martin et. al., 1986, Brown et al., 1999), 반면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Marmar et al., 2006).

황인희(2009)는 결혼관계의 영향에 대해서 미혼인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

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이 기혼보다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적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황인희, 2009).

연령의 영향에 대해서 Dwyer(2005)는 연령이 낮은 경찰공무원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경찰공무원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어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활동적인 외근업무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Dwyer, 2005).

그러나 성별, 결혼관계, 연령, 근무기간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연구결과들이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바이다(이옥정, 2010: 10-13).

## IV.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PTSD 수준

### 1. 연구 방법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전국에서 무작위 추출하였다. 표집된 조사대상자는 전국 23개 경찰서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공무원이었다. 자료의 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및 사전에 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자가 지방경찰청, 경찰서, 순찰지구대, 파출소 등의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향후에 다시 방문하여 작성된 설문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1,117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여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1,045부를 최종적으로 연구에 활용하였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성	956	91.5
	여 성	89	8.5
결혼관계	미혼	175	16.7
	기혼	870	83.3
학력	고졸	332	32.0
	전문대졸	174	16.8
	대졸	501	48.3

	대학원졸	30	2.9
계급	순경	115	11.0
	경장	333	31.9
	경사	424	40.6
	경위	158	15.1
	경감 이상	15	1.5
연령	20대	102	9.8
	30대	461	44.1
	40대	313	30.0
	50대	169	16.2
근무 기간	1년 이하	53	5.1
	2-5년	141	13.5
	6-10년	258	24.8
	11-15년	220	21.1
	16-20년	162	15.5
	20년 이상	208	20.0

조사대상자의 대략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남성 956명(91.5%), 여성 89명(8.5%)이었고, 결혼관계는 사별·이혼 등을 포함한 미혼이 175명(16.7%), 기혼이 870명(83.3%)으로 기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332명(32.0%), 전문대졸 174명(16.8%), 대졸 501명(48.3%), 대학원졸 30명(2.9%)으로 나타났다. 계급별 분포는 순경 115명(11.0%), 경장 333명(31.9%), 경사 424명(40.6%), 경위 158명(15.1%), 경감 이상 15명(1.5%)이었다.

연령대는 20대 102명(9.8%), 30대 461명(44.1%), 40대 313명(30.0%), 50대 169명(16.2%)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은 1년 이하 53명(5.1%), 2-5년 141명(13.5%), 6-10년 258명(24.8%), 11-15년 220명(21.1%), 16-20년 162명(15.5%), 20년 이상 208명(20.0%)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IES 및 은현정 등(2005)이 제시한 IES-R-K를 활용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분석과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 2.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

외상성 사건의 노출에 따른 외상성 스트레스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척도들이 개발되어 왔는데, Horowitz 등(1979)은 외상관련 증상을 자기보고식으로 작성하는 척도인 사건충격척도(Impact of Event Scale : IES)라는 도구를 개발하였고(Horowitz et al., 1979: 209-218), 이 척도는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Joseph, 2000: 101-113).

IES는 가장 흔하게 보고된 외상과 관련된 심리적 반응 양상들 중 침습 및 회피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IES는 또한 특정 외상 생활 사건의 심리적 영향을 연구한 조사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치료 연구에서 성과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왔다(Frank et al., 1998: 1289-1291).

그러나 원문 IES가 PTSD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과각성 증상을 측정할 수 없어서, Weiss와 Marmar가 1997년 IES 수정판(Impact of Event Scale Revised: IES-R)을 고안하였다(Weiss & Marmar, 1997: 399-411).

IES 원판에서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IES 수정판에서는 22문항으로 변화되었으며, 8개의 침습(intrusion) 증상, 8개의 회피(avoidance) 증상, 6개의 과각성(hyperarousal) 증상을 측정하도록 재구성되었다. 채점법 역시 수정되어 IES 원판에서는 지난 1주간의 증상빈도는 4점 척도(0-1-3-5)로 평가하였던 것이 IES 수정판에서는 지난 1주간의 증상심도를 5점 척도(0-4)로 평가하도록 구성하였다(은헌정, 2005: 303-304). Weiss의 IES 수정판이 나온 이후 IES 수정판 표준화에 대한 연구가 일본, 프랑스, 중국, 독일 등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헌정 등(2005)이 한국어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IES-R-K)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해본 결과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의 IES-R 표준화 연구와 비교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IES 및 은헌정 등(2005)이 제시한 IES-R-K를 활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파악하였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수준을 은헌정(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절단점을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여 보면, 25점 이상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높은 완전 PTSD 집단, 18-24점을 부분 PTSD 집단, 17점 미만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낮은 정상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3>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

PTSD 수준	완전 PTSD (25점 이상)	부분 PTSD (18-24점)	정상 집단 (17점 미만)
빈도(명)	348	92	605
비율(%)	33.3	8.8	57.9

이 연구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을 살펴보면 25점 이상인 완전 PTSD 집단은 33.3%(348명), 18-24점인 부분 PTSD 집단은 8.8%(92명), 17점 미만인 정상 집단은 57.9%(605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 응답자의 42.1%가 PTSD 증상을 겪고 있으며, 그 중 다수인 33.3%는 심각한 수준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을 살펴본 다른 국내 연구결과들보다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황인희(2009)의 연구에서는 완전 PTSD 12.7%(70명), 부분 PTSD 8.5%(47명)로 나타났고(황인희, 2009: 33-34), 이옥정의 연구에서는 완전 PTSD 22.9%(64명), 부분 PTSD 17.1%(48명)로 나타났다(이옥정, 2010: 45-46).

###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PTSD 수준

#### 1) 성별과 PTSD

<표 4> 성별과 PTSD 수준

성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남성	16.37	15.84	2.401	1043	.017
여성	12.19	14.32			

성별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 평균이 16.37로 여성 평균 12.19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남성 경찰공무원들이 여성 경찰공무원들보다 PTSD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실정상 최근에는 여성경찰공무원도 일선에서 외근근무에 많이 배치되고 있지만 그동안은 아무래도 남성 경찰공무원들이 여성 경찰공무원들보다 외근근무에 많이 배치되어왔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노출되고, 그로 인해 외상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일 것으로 여

겨진다.

## 2) 결혼관계와 PTSD

<표 5> 결혼관계와 PTSD 수준

결혼관계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미혼	16.78	15.98	.706	1043	.481
기혼	15.86	15.71			

결혼관계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 평균이 16.78로 기혼 평균 15.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고 그 차이가 매우 적었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기혼자가 사별·이혼 등을 포함한 미혼자에 비해 PTSD 수준이 다소 낮아 결혼관계가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3) 학력과 PTSD

<표 6> 학력과 PTSD 수준

학력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고졸	17.09	16.06	1.456	1035	.146
대졸 이상	15.56	15.62			

학력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졸 평균이 17.09로 대졸 이상 평균 15.5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이는 미국 연구자인 Robbers와 Jenkins(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TSD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obbers & Jenkins, 2005: 243-244).



#### 4) 계급과 PTSD

<표 7> 계급과 PTSD 수준

계급	평균	표준편차	t값	자유도	유의확률
경사 이하	16.35	15.84	1.527	1043	.127
경위 이상	14.35	15.20			

계급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계급을 경사 이하와 경위 이상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경사 이하 집단 평균은 16.35로 경위 이상 집단 평균 14.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기는 했으나 경사 이하 집단이 2수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경위 이상 집단보다 경사 이하 집단의 경찰공무원들이 일선 외근 현장에 많이 출동하기 때문에 위기상황 노출과 외상 경험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 5) 연령과 PTSD

<표 8> 연령과 PTSD 수준

연령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20대	14.15	14.89	.898	.442
30대	16.22	15.53		
40대	16.77	16.33		
50대	15.20	15.76		

연령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대 평균 14.15, 30대 평균 16.22, 40대 평균 16.77, 50대 평균 15.20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나 일선에서 왕성한 근무를 하는 시기인 30-40대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이 다소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 근무기간과 PTSD

<표 9> 근무기간과 PTSD 수준

근무기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1년 이하	18.45	16.74	.550	.648
2-10년	16.02	15.43		
11-19년	15.98	15.64		
20년 이상	15.34	16.27		

근무기간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년 이하 평균 18.45, 2-10년 평균 16.02, 11-19년 평균 15.98, 20년 이상 평균 15.3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나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PTSD 수준이 다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계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장 근무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복무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극단적으로 PTSD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이전에 도태되어 조직에서 배제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Robbers와 Jenkins(2005)의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길수록 PTSD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obbers & Jenkins, 2005: 244-245).

## 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실제 PTSD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PTSD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경찰공무원 채용·인사·교육 등의 분야에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은 전체 응답자의 42.1%가 PTSD 증상을 겪고 있으며, 그 중 다수인 33.3%는 심각한 수준의 증상으로 고통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경찰공무원의 PTSD 수준을 살펴본 다른 국내 연구결과들보다도 다소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결혼관계, 학력, 계급, 연령, 근무기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분석과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 중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나머지 결과들도 한계는 있으나 평균치를 비교하여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는 남성 평균이 16.37로 여성 평균 12.19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관계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는 미혼 평균이 16.78로 기혼 평균 15.8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는 고졸 평균이 17.09로 대졸 이상 평균 15.5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는 계급을 경사 이하와 경위 이상 두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경사 이하 집단 평균은 16.35로 경위 이상 집단 평균 14.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는 20대 평균 14.15, 30대 평균 16.22, 40대 평균 16.77, 50대 평균 15.20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에 따른 PTSD 수준의 차이는 1년 이하 평균 18.45, 2-10년 평균 16.02, 11-19년 평균 15.98, 20년 이상 평균 15.34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찰공무원의 PTSD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고위험 경찰공무원의 발견 및 관리로 최근에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PTSD 측정도구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고위험 경찰공무원을 발견하고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기법의 보급으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인명구조요원, 교정공무원, 의료직 종사자 등 생명이 위협한 상황과 폭력적이거나 잔혹한 장면에 노출되기 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상황 스트레스(Critical Incident Stress)를 겪기 쉬운데, 이러

한 위기상황 스트레스가 만성화·고착화·악화되기 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인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 이하 CISM)를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직원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직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ce Programs : EAP)을 개발하여 직원의 스트레스 등 개인적 문제에 대한 폭넓은 개입과 예방활동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EAP는 직원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가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직원의 고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넷째는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된다. PTSD로 인한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특히 가족과 동료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지지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스트레스 관리 교육의 제공으로 PTSD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Stress Management) 기법을 교육·훈련하여 경찰공무원 스스로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신성원, 2011a).

## <참 고 문 헌>

- 박해응·최수찬. (2005).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우울, 자아존중감, EAPs 욕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12: 6.
- 배점모. (2010).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및 우울간의 관계 비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신성원. (2007). 「경찰공무원의 일상적·직업적 경험이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신성원. (2009). 경찰관의 가치관이 경찰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8): 376-383.
- 신성원. (2011a). 경찰관의 PTSD 수준 및 대처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266-272.
- 신성원. (2011b).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1): 61-82.
- 유양숙. (199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가족을 위한 개입. 「사회과학연구」, 4(1): 225-274.
- 은헌정.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3): 303-304.
- 이옥정. (2010). 「경찰관의 외상성 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전유진. (2009). 「경찰공무원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주혜선. (2008). 「외상 후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수찬. (2004). 기업근로자의 사회심리적 당면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보」, 6(1): 71-103.
- 홍종관. (2005). 대구 지하철 화재 사망자 유가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1(1): 140-141.
- 황인희. (2009).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및 외상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연합뉴스」. (2009). 5. 6.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 Brown, J. & Fielding, J. & Grover, J. (1999). Distinguishing traumatic, vicarious and routine operational stressor exposure and attendant adverse consequences in a sample of

- police officers. *Work & Stress*, 13(4): 312-325.
- Carlier, I. V. E. & Lamberts, R. D. & Gersons, B. P. (1997). Risk factors for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in police officers: a prospective analysi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5(8): 498-506.
- Carlier, I. V. E. & Lamberts, R. D. & Gersons, B. P. (2000). The dimensionality of trauma: A multidimensional scaling comparison of police officers with and withou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97: 29-39.
- Dwyer, L. A. (2005). *An investigation of secondary trauma in police wives*. Dissertation for Ph.D., Hofstra University.
- Frank, J. B. & Kosten, T. R. & Giller, L. (1998). A randomized clinical trial of phenelzine and imipramine f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289-1291.
- Green, Ben. (200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UK police officers. *Current Medical Research and Opinion*, 20(1): 101.
- Greene, R. L. & Lindy, J. D. (199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victims of disasters.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17(2): 301-309.
- Horowitz, M. & Wilner, N. & Alvarez, W. (1979). Impact of event scale : A measure of subjective stress. *Psychosom Med*, 41: 209-218.
- Joseph, S. (2000). Psychosomatic evaluation of Horowitz's impact of event scale: a review. *Journal of Trauma Stress*, 13: 101-113.
- Kroes, W. H. & Margolis, B. & Hurrell Jr., J. J. (1974). Job stress in policemen.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2: 145-155.
- Marmar, C. & McCaslin, S. & Metzler, T. & Best, S. & Weiss, D. & Fagan, J. (2006). Predictors of Post Traumatic Stress in Police and Other First Responder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71: 1-18.
- Martin, C. & McKean, H. & Veltkamp, L. (1986).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police and working with victims: A pilot study. *Journal of Police Science & Administration*, 14(2): 98-101.
- Paton, Douglas & Violanti, John M. & Burke, Karena & Gehrke, Ann. (2009). *Traumatic Stress in Police Officers: A career-length assessment from recruitment to retirement*. Springfield, Illinois: Charles C Thomas.
- Petterson, G. T. (2000). Demographic factors as predictors of coping strategies among police officers. *Psychological reports*, 87: 275-283.
- Riddle, Robin Thomas. (1999). *The Relation Between Life Stress, Work Stress, and Traumatic Stress and Burnout and Cynicism in Police Officers*. Dissertation for

- Ph.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University.
- Robinson, H. M. & Sigman, M. R. & Wilson, J. P. (1997). Duty-related stressors and PTSD symptoms in suburban police officers. *Psychological Reports*, 81: 835-845.
- Slaikue, K. A. (1990). *Crisis intervention: A handbook for practice and research*. Massachusetts: Allyn and Bacon.
- Spielberger, C. D. & Westberry, L. G. & Grier, K. S. & Greenfield, G. (1981). *The Police Stress Survey: Sources of Stress in Law Enforcement*. Tampa, FL.: Human Resources Institute.
- Weiss, D. S. & Marmar, C. R. (1997).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n Wilson, J. P. & Keane, T. M. (1997). *Assessing Psychological Trauma and PTSD*, 399-411. New York: Guilford Press.







## 발표 2



#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남 재 성(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목 차>

- |                         |                                   |
|-------------------------|-----------------------------------|
| I. 서설                   | IV.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평가와<br>정책적 함의 |
| II. 보안경찰의 의의            | V. 결어                             |
| III.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변화 |                                   |

## I. 서 설

경찰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안경찰은 국가안전과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경찰활동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기본적 목적으로 하는 보통경찰과는 근본적 지향점이 다르며, 그 업무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안경찰은 건국 직후 이승만 정권이 경찰조직을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으로 편제하고, 보안이나 공안 관련 업무를 치안국 산하 사찰과에 배속시키는 것에서 출발한 후 65년 이상의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과정을 거쳐 오고 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안경찰은 정치적 영향에 민감하여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당시의 보안경찰은 조직과 인력의 측면에서 축소의 과정을 거친데 반해 북한의 비핵화, 개혁·개방 유도라는 일관된 원칙과 목표를 통해 경색된 대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안경찰이 확대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안경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수치 역시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안경찰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양상을 이전 정부와 비교해 봄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경찰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향후 보안경찰의 정책적 지향점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보안경찰의 의의

### 1. 보안경찰의 개념

보안경찰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본질적 작용으로 국가의 기본을 구성하는 체제, 질서, 국민, 재산 등의 국가적 법익을 여러 위해요소들로부터 보호(김상호 외, 2004: 759)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찰활동이다. 따라서 보안경찰은 사전 예방적 기능과 사후 진압적 기능을 동시에 내포(허경미, 2008: 468; 장노순·남재성, 2009)하여 북한에 대한 안보활동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주체에 대한 보안활동을 담당하는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치안위주의 전통적 안보개념이 점차 확대되어 보안경찰의 개념 역시 더 불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최근에는 전통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뿐만 아니라 개인안보(individual security), 인간안보(human security),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들이 포괄적 의미의 안보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보안경찰 역시 보다 확장된 개념정의가 요구된다. 즉, 기존의 국가안보 개념을 넘어 개인안보 및 사회전반에 걸친 포괄적 안보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감안해 볼 때 보안경찰은 다양한 위해요소로부터 국가 뿐 만 아니라 사회전반, 그리고 개인에 대한 보안에 이르기까지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장노순·남재성, 2009).

한편, 법률적 의미로서의 보안경찰은 「경찰법」 제 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경찰법」 제 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치안정보의 수집 조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에서의 2항의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그리고 3항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보안경찰의 주요 임무 및 역할이자 개념적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 2. 보안경찰의 역할 및 임무

보안경찰의 역할은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외에 다수의 개별법령들에 의해서도 규정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형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의 법률과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 등의 다양한 하위법령에서는 보안경찰활동의 개별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법령들이 보안경찰활동의 주요한 법적토대를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에서는 보안경찰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다. 이 직제에 따르면 보안경찰의 기본적 직무영역은 ①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②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③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④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⑤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⑥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⑦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⑧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 보안국 등 일선 보안경찰기관에서는 위의 법률적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 직무를 수행하되, 전통적인 보안경찰활동과 달리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까지 직무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보안경찰에서는 전통적 직무영역이라 할 수 있는 방첩활동<sup>1)</sup>, 보안수사<sup>2)</sup>, 보안관찰<sup>3)</sup> 업무, 경호안전활동 등의 직무 이외에 북한이탈 주민지원활동, 국내선 공항 보안활동,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보안업무<sup>4)</sup>, 경제안보사범 수사 등을 새로운 직무영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장노순·남재성, 2009).

## 3. 보안경찰의 역사적 변천과정

### 1) 1991년 이전의 보안경찰

- 1) 방첩(counterintelligence)이란 기밀유지, 보안유지라고도 하며, 상대로 하여금 우리 측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측의 어떤 상황도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책을 말한다(임준태, 2006: 151; 이운주, 2004: 367).
- 2) 보안수사란, 국가존립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반국가사범, 즉 보안사범(정보사범)을 인지·색출·검거·신문하는 일련의 활동(박종문, 2003: 230)을 말한다.
- 3)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 특정범죄 위반자의 장래 위험성을 예방하고 행위자의 치료·교육·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사회방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과하여지는 형벌 이외의 형사체제(서보학·김일수, 2006: 819)를 말한다. 또한 보안관찰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를 의미(최웅렬 외, 2007: 247)되기도 한다.
- 4) CIQ는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을 일컫는 용어로서 수출입 물품의 효율적 통관관리, 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반출입 되는 물품의 검역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통일부, 2004: 65).

### (1) 1960년 4·19 이전의 보안경찰

보안경찰의 공식적 성립은 건국 이후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에 배속된 사찰과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48년 9월 3일 경무부는 정식으로 내무부에 인수되면서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으로 재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경찰은 치안국 산하의 보안과 및 사찰과로 변모하였는데, 보안과는 당시 좌익과 우익의 극렬한 대립 양상 속에 폭동진압 등과 같은 경비업무를 주로 담당(경찰청, 1995: 112)하였다.

이후 전시중인 1950년 8월 10일 대통령령 제380호에 의해 보안과는 정보수사과로, 1953년 7월 6일에는 대통령령 제 804호에 의해 특수정보과로 개칭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보안경찰은 그 업무영역이 크게 확장되어 정치, 문화 등에 대한 포괄적인 사찰업무(이호영, 2006: 179)와 잔비소탕과 간첩색출 등의 임무까지도 수행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보안경찰은 시대의 특성상 대공사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는데(경찰청, 1995: 222-224; 경찰청 60년사 편찬팀, 2005: 20), 당시의 역할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활동이 당시의 체제유지나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도 유추할 수 있다.

### (2) 4·19 혁명 및 5·16 쿠데타 이후 내무부 치안국 체제의 보안경찰

종래의 보안경찰 관련 조직 중 특수정보과는 4·19와 동시에 그 범위가 대공분야로 축소되고, 명칭 역시 대통령령 제1583호에 의해 정보과로 개칭되어 치안국 시대의 보안경찰 업무는 주로 정보과에 의해서 수행되었다.<sup>5)</sup>

1963년 12월 16일에는 ‘기타 반국가적 임무사항’이 내무부직제로 보안경찰의 기본적인 임무로 부여되었으며, 1966년 7월 1일에는 외사과가 설치(허남오, 1998: 343)되어 외사경찰과 관련된 활동이 보안경찰의 업무영역에서 제외되었다.

### (3) 내무부 치안본부 체제의 70년대 보안경찰

1970년대에는 닉슨의 중공방문 발표와 중공의 유엔가입(1971년 10월 27일) 등 한반도의 대외적인 변화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박정희 정부의 유신단행으로 대규모의 소요사태가 빈발하고 영부인이 피살된 문세광 사건 등으로(허남오, 1998: 350) 경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안보지상주의가 크게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2월 24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해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승격되었다. 치안본부는 출범 이후 본부 내에 1·2·3부를 설치하였으

5) 1964년도의 치안국 기구표를 살펴보면, 치안국은 치안국장 산하에 총 8개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8개과 중 보안과와 정보과는 별도의 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의 보안경찰 업무는 정보과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며, 보안과는 보안계와 교통계로 구성되어 현재의 방범, 즉 생활안전 업무와 교통 관련 업무를 수행한 조직이었다. 실제로 당시 보안과에서는 풍속업무, 교통업무, 총포화약 안전 및 노유자, 요구호자 등의 보호 등의 업무나 각종 범예예방이나 방범지도 및 계몽단속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며, 보안경찰은 제3부에 속하게 되어 일반정보를 담당하는 정보 제1과와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제2과로 편제되었다.<sup>6)</sup>

#### (4) 내무부 치안본부 체제의 80년대 보안경찰

1980년대는 5·18 민주항쟁을 계기로 각종 정치집회나 학원사태, 노사분규가 증가하여 보안경찰이 조직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당시 보안경찰은 대공과나 이후의 대공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sup>7)</sup>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처음으로 ‘대공’이라는 용어가 공식직제로 사용되었으며, 대공과는 1985년도의 기구개편과 더불어 대공부로 승격되었고, 대공부 내에는 대공1과, 대공2과, 대공수사과가 포함되었다(경찰청, 1995: 355). 또한 같은 해 6월 14일에는 대공부가 대공1부, 2부, 3부로 더욱 확대되기도 하였다. 대공1부에는 대공3과가 신설되어 대공1, 2, 3과가, 그리고 대공2부에는 대공수사과가 세분화된 대공수사1과, 2과, 3과, 대공3부에는 대공수사4과, 5과, 6과가 설치되었다(이호영, 2006: 181).

그러나 이러한 확대일로의 과정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노태우 정권 초기에 축소의 과정으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기도 한다. 1987년 대통령령 제12768호에 의해 대공수사3과와 6과가 폐지되어 대공2부에는 대공수사1과, 2과, 대공3부에는 대공수사3과, 4과로 각각 축소 운영한 바 있다.<sup>8)</sup>

#### 2) 경찰법 제정 및 경찰청 설립 이후 1990년대의 보안경찰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의 보안경찰은 경찰청 산하의 보안국 체제로 요약될 수 있다.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청이 설립되면서 1991년 7월 23일 대통령령 제13431호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가 마련되어 대공부가 보안국으로 개편되었으며, 보안국 내 7개의 과 역시 5개 과로 축소, 개편되었다(이호영, 2006: 184). 또한 1994년에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대통령령 제13431호)」에 의해 보안5과가 폐지되고, 1999년에는 행정자치부령 제5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 직제 시행규칙」에 의해 보안4과가 폐지되어 현재와 같은 보안1과, 2과, 3과의 형태가 갖추어졌다(경찰청, 2004).

6) 제3부의 조직 중에서 정보 제1과에서는 1. 치안에 관련되는 첩보의 수집 및 분석, 2. 대전복·대태업 등 반국가 사범의 수사 및 수사지도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과에서는 1. 대공에 관한 첩보의 수집 및 분석, 2. 간첩 및 사회안전 사범의 수사 및 수사지도의 임무를 수행하였다(대통령령 제8642호)

7) 실제로 보안경찰활동의 강화를 위하여 1981년 내무부 치안본부 내에 제4부가 신설되고 그 안에 정보1과, 2과, 3과와 대공과가 설치되었다(이호영, 2006: 181).

8) 그러나 이와 같은 조직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비판도 있어 80년대의 보안경찰은 전반적으로 확대일로의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3) 2000년대 이후 현재의 보안경찰

2000년대 이후 보안경찰은 조직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의 보안경찰조직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이 중 보안1과는 서무·기획·예산, 경호안전, 보안관찰, 북한이탈주민보호, 주민신고제도, 국내선공항의 보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보안 2과에서는 국가안보 관련 업무 분석·종합, 방첩·국가안보위해 수사지도조정, 남북교류협력, 북한방송의 수신과 분석, 사이버분석·수사·기법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3과에서는 방첩수사지도, 국가안보 위해수사지도, 합동신문업무, 간첩통신, 검거간첩의 활용 및 관리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자료 : 경찰청 내부분서.

<그림 1> 現 경찰청 보안국의 조직구조와 임무



### Ⅲ.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변화

#### 1. 조직 및 인력 변화

##### 1) 보안경찰의 조직 변화

2000년대 초중반은 보안경찰의 위상이 크게 약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보안경찰의 조직 확대나 개편 없이 보안경과자를 중심으로 보안수사대의 전문 인력을 일선 기관으로 재배치함으로써 보안인력의 축소 정책을 유지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업무, CIQ 업무, 경제안보사범에 대한 대응활동 등 안보개념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수요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도 표면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기존의 경찰청 보안국 내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 개편하고 지방경찰청별로 1~4개씩 운영하는 보안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보안인력 간의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에 그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0011711195300408>, 2010. 01. 17 재구성).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단순 조직개편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과거 보안사이버분석계의 권한이 인터넷상에서의 안보 위해 사례를 발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지시하는 것에 국한된 반면 신설된 보안사이버수사대는 관련 사건의 수사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보안인력의 교류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강화하였다는 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이 과거 정부에서 위축되었던 자체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 2) 보안경찰의 인력 변화

###### (1) 보안경찰의 인력 변화

아래의 <표 1>은 최근 10년간 보안경찰의 인력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2년 3,071명에 달하던 보안경찰 인력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7년 2,181명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 정부의 정책적 기조가 영향을 미치던 이명박 정부 초기까지는 지속되었으나 이후 정책적 변화를 보이게 된다. 특히, 정권 중기에 접어든 2010년에는 1,935명으로 최근 10년 이래 최초로 증가세로 전환하여 보안경찰의 인력 보강

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최근 10년간 보안경찰 인력변화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071명	2,904명	2,708명	2,650명	2,257명	2,181명	1,874명	1,869명	1,935명	1,918명

※ 자료 : 「브레이크 뉴스」, [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70199&section=sc1](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70199&section=sc1), 2011. 04. 23 재구성.

## (2) 보안수사 인력의 변화

보안경찰 인력 중 필수 행정인력을 제외한 보안수사 인력의 변화는 보안경찰의 거시적인 정책적 기조를 대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수치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는 최근 5년간 보안수사 인력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409명이던 보안수사 인력은 2008년 349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인 후 2009년 381명, 2010년에는 482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수치는 보안경찰이 이명박 정부 중기 이후 보안수사 인력의 보강을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전통적 안보위해 사범에 대한 단속과 검거를 강화하는 정책적 기조로 변화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2> 최근 5년간 보안수사 인력 변화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418명	409명	349명	381명	482명

※ 자료 : 「시스인 live」,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6>, 2011. 04. 23 재구성.

한편, 1996년부터 4년간 운영하던 보안경과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보안인력 감축 조치에 따라 2000년부터 신규 인원을 선발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따라서 당시 1,795명의 보안경과 대상자 중 75%가 보안 관련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보안경과 인력을 선발하여 2009년 856명, 2010년 252명의 보안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00117\\_11195300408](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00117_11195300408), 2010.01.17;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91815355&code=9900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91815355&code=990000), 2010. 1. 18 재구성).

## 2. 활동상의 주요 변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안경찰 활동상의 주요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보안법 등 전통적 안보위해사범의 증가, 둘째,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의 증가, 셋째, 경제안보사범의 감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증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내외적인 정세변화에 따라 보안경찰활동의 영역이 보다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검거 등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보안경찰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아래의 <표 3>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검거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5명과 39명에 불과하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79명, 2010년 151명으로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과 같이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안보위해사범의 단속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현황

2006년	2007	20808	2009	2010	2011년 7월 31일 현재
35명	39명	40명	70명	151명	72명

※ 경찰청. (2011). 「2011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참조.

### 2) 사이버 안보사범 증가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이 전통적 안보위해사범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표 4>는 최근 6년간 보안경찰의 보안사이버 단속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각각 3명과 5명에 불과하던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사범처리 현황은 2009년 32명, 2010년 82명 등으로 크게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 친북사이트의 차단 및 발견, 문건삭제 건수, 불법 카페 등의 폐쇄 건수 역시 크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최근 6년간 보안사이버 단속 실적

구분 연도	사법처리 (명)	해외 친북사이트(개)		트위터 등 sns계정 차단(개)	문건삭제(건)	불법카페 등 폐쇄 (개)
		차 단	발 견			
<b>계</b>	<b>162</b>	<b>43</b>	<b>70</b>	<b>96</b>	<b>141,239</b>	<b>211</b>
2006년	3	6	12	-	1,388	1
2007년	5	1	9	-	1,434	3
2008년	5		9	-	1793	2
2009년	32	6	10	-	14,430	18
2010년	82	16	16	33	80,449	85
2011년 7월 현재	<b>35</b>	<b>14</b>	<b>14</b>	<b>63</b>	<b>41,745</b>	<b>102</b>

※ 경찰청. (2011). 「2011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참조.

### 3) 경제안보사범의 감소

이명박 정부 이후 전통적 안보위해사범에 대응강화와는 반대로 노무현 정부 당시 보안경찰의 새로운 주요 활동으로 분류되던 경제안보사범에 대한 대응은 크게 약화되고 있다. <표 5>는 최근 5년간 경제안보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7년 54명이었던 경제안보사범에 대한 검거실적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239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9년에는 68명, 2010년 27명, 2011년 7월 현재는 2명에 그치고 있어 보안경찰의 주요 활동 기조에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최근 5년간 경제안보사범 검거실적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7월 현재
54명	239명	68명	27명	2명

※ 경찰청. (2011). 「2011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참조.

### 3. 역대정부와의 비교

아래의 <그림 2>는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까지 보안경찰의 인력 및 조직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이양 과정에서 보안과는 4과에서 3과로 축소되었으며, 이러한 조직구조가 현 정부까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보안경찰 인력 역시 김영삼 정부 당시 4,065명에 달하던 인력규모가 큰 틀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 이양과정에서 보안과는 4과에서 3과로 축소된 것은 정부의 정치적 이념과 대북정책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으로 유추된다. 즉, 김영삼 정부는 정치적 성향과 대북정책이 보수적, 대립적 관계를 유지했던 정부임에 반해 김대중 정부는 다소 진보적이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끌어내는 등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한 점이 보안경찰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는 김영삼 정부시기에 급격하게 증가했던 보안경찰의 인력도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는 보안인력을 대폭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보안경과의 선발도 중단한 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와 이념적 성격이 유사하고 정책적 방안을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조직구조상 특별한 변화 없이 보안경찰의 인력감소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보안경찰의 인력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정치적 성향의 정부가 관련 정책을 계승한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보수적인 정치이념과 더불어 남북한을 대립적인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정치적 성향과 이념, 정책적 기초를 유지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안경찰의 조직적 변화 보다는 10년 만에 보안경과의 신규인력을 선발하였다는 점, 보안경찰 인력이 증원되었다는 점 등 인력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진보적 성향의 정부와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고, 대북 관계를 중심으로 국가의 안보 중점 영역을 재편함에 있어 큰 틀에서의 조직적 변화는 지양하되, 인력에 대한 보강을 통해 안보정책의 수정을 단행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한미 FTA 등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반정부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권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반대여론에 대한 강경대응책이 주요 정책으로 결정된 점 역시 보안경찰의 인력 증가를 가져오는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정부별 보안경찰 인력과 조직 변화 추이

## IV.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평가와 정책적 함의

### 1. 보안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보안경찰의 존폐논의까지 제기되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안경찰의 수사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성격, 정책적 기조, 대북정책<sup>9)</sup>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판단된다. 특히, 이명

9)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선 당사자 해결 후 국제적 해결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남남갈등 심화와 한미관계 약화 등 문제점이 부각됨에 따라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핵문제 해결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인식하에 남북관계 보다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는 대북정책을 유지하고 있다(조춘성, 2011).

박 정부에서의 보안경찰은 조직 규모의 확대 보다는 주로 수사역량의 강화를 위해 소규모의 조직개편과 더불어 관련 인력의 보강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조직적 측면에서의 수사역량 강화는 ‘보안사이버분석계’를 ‘보안사이버수사대’로 확대 개편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안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대남 심리전이나 친북계시물을 적발하고 수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관련 사건의 수사까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해 사범들에 대한 단속과 검거, 수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안경과제의 부활과 보안 수사요원의 증원으로 요약될 수 있는 관련 인력의 보강 역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이자 특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보안경과제는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2009년 856명, 2010년 252명의 보안경과자를 신규 선발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보안 수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 공표한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과거 경찰청은 1996년 7월 「보안경찰 인사운영규칙」을 통해 보안경과제를 신설하면서 신설 목적으로 북한의 체제불안에 따른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에 대비해 보안 분야에 정예화된 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26570>, 1996. 7. 27 재구성). 그런데,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과제의 재도입은 도입 당시의 취지를 벗어나 대공수사 능력 강화를 위한 보안수사 중심의 보안경과제로 부활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과 같은 전통적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검거건수가 급증한 점이 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안수사 요원의 증원 역시 보안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409명에 그치던 보안수사요원은 이명박 정부 중기인 2010년 482명으로 약 8.5%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보안경과제의 부활에 따른 자연적 증가와 더불어 보안 수사에 대한 정부와 조안경찰 당국의 정책 변경에 따른 결과로 유추된다.

결국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직의 개편과 인력보강을 통해 과거 진보적 정권에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는 보안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사범의 단속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0) 실제로 이명박 정부 초기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장기적으로 과거 수준으로 보안 수사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공안사건의 수사능력 강화를 조속히 회복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53673>, 2009. 11. 2 재구성).

## 2. 전통적 안보개념에 대한 역할 강화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안보개념은 외부의 국가나 적으로부터 가해져오는 군사적 공격과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 위주의 안보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장노순·남재성, 2009). 따라서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보안경찰 활동은 주로 남북 긴장관계에서 야기되는 간첩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안보위해 세력의 검거와 수사에 집중된다.

그러나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북긴장 관계의 완화와 정부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전통적 안보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포괄적 안보개념<sup>11)</sup>에 입각한 보안경찰의 역할 변화에 주력하였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의 활성화,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인 CIQ 업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전통적 안보개념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여 이에 입각한 보안경찰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전례 없이 ‘안보위해 사범 수사 100일 계획’을 전국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 있으며, 보안경찰에 대한 업무평가 시 안보위해 사범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고유의 보안경찰 기능을 되살리고 대공수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수 제시하고 있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625004156&subctg1=&subctg2>, 2009. 6. 26 재구성).

결국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은 보안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대공수사 기능으로 재편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냉전 종식 이후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안보위해 요소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한의 특수 긴장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북한 관련 위해요소 외에도 매우 다양한 위해요소가 대내외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편향된 보안목표의 설정으로 여타의 안보위해 요소에 대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스파이나 산업기밀유출 범죄와 같은 경제안보 요소는 국가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요

---

11) 이명박 정부에서 전통적 안보개념이 재차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의 전 세계적 안보개념에서는 무력사용의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시장경제체제, 사회적 공동체 유지, 안전한 생존 환경 유지 등 비군사적 위협이나 위협 등의 취약성을 제거하는 등의 매우 광범위한 포괄적 안보개념이 강조되고 있다(최종철, 2007: 7-8; 남재성, 2008: 66). 특히, 전통적 안보개념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체제와 주권의 존립에 초점을 맞춘 경찰의 활동이 중요했다면, 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는 개인 혹은 집단의 안보에서 이들의 생존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활동으로 그 영역이 매우 확장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 안보개념을 대신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의 대두는 기존의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 이외에 정치안보(political security),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사회안보(societal security), 환경안보(environmental security), 인간안보(human security)<sup>1)</sup> 등 새로운 안보개념을 파생시키고 있다(남재성, 2008: 66).



소이다.<sup>12)</sup> 때문에 최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경제안보사범에 대한 단속과 검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보안경찰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현실과는 달리 관련 활동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잔여기간과 향후 새로운 정부의 보안경찰에서는 이러한 편향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안보 위협요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다수의 잠재적 위협요소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국가안보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 강화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변화 중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인터넷 보급률과 관련 인프라의 구축 확대,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각종 이적행위와 관련 게시물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경찰 당국의 활동 역시 강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집권 중기에 접어든 2009년 이후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인원 총 293명 중 50%에 해당하는 수치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글이 문제가 된 소위 ‘사이버 사범’에 해당한다. 또한 2006년 이후 불법카페 등에 대한 폐쇄 건수 총 211건 가운데 207건이 2008년 이후에 집중된다는 점 역시 이명박 정부 이후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응활동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건삭제 건수는 총 138,417건으로 총 건수 역시 이전 정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삭제 건수 중 북한 체제 선전이 47%,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찬양이 40.4%, 미국 비난이 6.4%, 정부 비난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61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612.html), 2011. 11. 26) 사이버 이적행위 및 반미,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의 문건 삭제 건수 가운데 6.2%가 정부 비난성 문건이라는 점은

---

12) 한 기업의 기술이나 기밀이 유출되면 해당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자칫 생존마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7년 현대·기아차 전·현직 직원 9명이 차체용접과 조립기술 등 5개 핵심기밀을 중국 업체에 넘긴 사건, 지난 2010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해외 반도체 장비회사에 유출하려던 사건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충격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피해액은 50조에 육박할 정도로(「Etnnews」, <http://www.etnews.com>, 2011. 10. 21 재구성)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즉,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이 사이버 안보위해 사범 외에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 사이트나 문건, 게시물에 대한 단속에도 많은 역량을 투입한 점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 소통 공간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 및 단속대상으로 규정하여 극단적 정치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폐단을 야기 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파생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보안경찰은 해외 친북사이트나 북한을 찬양하는 카페 등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규제정책을 유지하되,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나 개인적 견해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한 단속과 규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 4. 비판적 여론의 확대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은 과거 정부와 달리 매우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 활동을 통해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보안경찰에 대한 각종 부정적 여론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에 비례하여 구속영장 기각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과 2007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 건수는 2008년 29건, 2009년 16건, 2010년 22건 등 모두 67건으로 이 가운데 29건이 기각되어 영장 기각률이 무려 43.3%에 달하고 있다(「경제투데이」,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_1005101216370&ts=131703](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_1005101216370&ts=131703), 2011. 10. 5). 따라서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은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보안경찰의 적극적이고 강경한 활동으로 인해 심지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까지 입건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종래의 포괄적 법적용을 통한 무리한 수사관행을 지양하고 보다 신중한 수사와 영장신청이 요구된다.<sup>13)</sup>

보안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보홍보 역시 부정적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경찰청 보안국

---

13) 지난 2009년 대구의 한 초등학생이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한 2009년 경찰이 입건한 인터넷 안보위해사범 중 6명은 단순 호기심에 카페 등을 만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었다(「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7255265&code=940100200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7255265&code=9401002009). 1. 17).

에서는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9년 예산 9,300만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홍보만화를 제작, 유포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전국 250여 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안보홍보 내실화를 위한 아이디어' 응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안보사랑 디카 폰카 사진전',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안보만화 감상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청소년 안보체험 소감문',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안보체험 수기' 등의 응모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홍보방안은 경찰 역사상 전례 없이 이루어진 홍보활동으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라는 문제점과 더불어 홍보의 내용이 북한과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집단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 그쳐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보안경찰 당국에서는 남북한 특수긴장관계에서 파생되는 안보의 기본 요소에 대한 홍보는 유지하되, 시대에 걸맞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에 입각한 위해요소를 분석, 평가하고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V. 결 어

이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안경찰의 변화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경찰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향후 보안경찰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은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 '보안사이버수사대'의 설치, 보안경과제의 부활과 보안 수사요원의 증원 등의 인력 보강을 통해 보안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보위해 사범 수사 100일 계획'과 보안경찰의 업무 평가 시 안보위해 사범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으로 대공수사와 같은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이버 공간의 단속 및 보안수사활동을 강화했다는 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중 절반이 사이버 사범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카페 등의 폐쇄 및 문건 삭제 건수가 폭증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넷째, 보안경찰은 위와 같은 정책들로 인해 많은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높은 영장 기각률과 더불어 초등학생마저 입건하는 무리한 수사 관행, 그리고 시대에 역행한다는 평가는 받고 있는 안보홍보 등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보안경찰에서는 안보에 대한 편향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안보 위협요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국가안보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강화를 위해 잠재적 위협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규제정책을 유지하되,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나 개인적 견해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한 단속과 규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보홍보에 있어서도 남북한 특수긴장관계에서 파생되는 전통적 위협요소에 대한 홍보는 강화하되,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보다 다양한 위협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에 의해 보안경찰의 정책방향이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안경찰에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 동안 이어온 많은 정책들이 크게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큰 사회적 비판과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보안경찰은 정부의 변동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한반도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 60년사 편찬팀. (2005). “한국경찰 60년사의 쟁점과 과제 “. 경찰60년사 2005년도 학술 세미나,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 경찰청. (1995). 「警察 五十年史」, 서울 : 경찰청.
- 경찰청. (2004). 「2004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서울 : 경찰청.
- 경찰청. (2011). 「2011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서울 : 경찰청.
- 김상호 외. (2004). 「경찰학개론」, 서울 : 법문사.
- 남재성. (2008). “인간안보와 보안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한국경찰연구」, 7(4): 63-94.
- 박종문. (2003). 「경찰보안」, 용인 : 경찰대학.
- 서보학·김일수. (2006). 「형법총론」. 서울 : 박영사.
- 이운주. (2004). 「경찰보안론」, 용인 : 경찰대학.
- 이호영. (2006). “경찰 내 보안기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찰개혁론」, 서울 : 법문사.
- 임준태. (2006). “보안경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경찰개혁론」, 서울 : 법문사.
- 장노순·남재성. (2009). 「보안경찰의 새 패러다임 정립방안」,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 조춘성. (2011). “한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박사 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최응렬·정우일·차훈진. (2007). “현행 보안관찰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2) : 245-267.
- 최종철. (2007).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2007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7-8.
- 통일부. (2004). 「남북간 분계역(도라산역, 저진역) 철도출입시설 관리방안」, 서울 : 통일부.
- 허경미. (2008). 「경찰학개론」, 서울 : 박영사.
- 허남오. (1998). 「한국경찰제도사」, 서울 : 동도원.
- 「경제투데이」,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1005\\_101216370&ts=131703](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1005_101216370&ts=131703), 2011. 10. 5.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7235526\\_5&code=94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7235526_5&code=940100), 2009. 1. 17.
-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9](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19)

18 1535 5&code=990000. 2010. 1. 18.  
「브레이크뉴스」, [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70199&section=sc1](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70199&section=sc1), 2011. 04. 23.  
5004156 &subctg1 =&subctg2.  
「세계일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62>  
「시사 in live」,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6>, 2011. 04. 23 .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026570>, 1996. 7. 27.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953673>, 2009. 11. 2.  
「파이낸셜뉴스」,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0011711195300408>, 2010. 1. 17.  
1711195300408, 2010. 01. 17.  
「파이낸셜뉴스」, <http://cn.moneta.co.kr/Service/paxnet/ShellView.asp?ArticleID=2010011711195300408>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61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7612.html), 2011. 1. 26  
「Etnnews」, <http://www.etnews.com>, 2011. 10. 21.



# 발표 3





#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에 관한 평가

신 현 기(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 자치   |
| II. 논의의 배경                | 경찰제 소위원회 활동               |
| III. MB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노력에 | V. 결론: 19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환경 |
| 대한 분석                     | 예측                        |

## I. 서론

최소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를 포함하여 역대 정부들 그리고 대선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테마에 관해 대선 공약에서 단골메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올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도 위의 테마들은 과거 그 어느해 처럼 후보자들에게 있어 또다시 반복되는 주요 공약테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분야의 주제는 각자 후보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선거정책적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찾을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분야의 테마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할 만큼 국가, 사회 환경들이 변화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시민들의 시각도 이제는 상당히 성숙되었을 뿐 아니라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분위기도 적지 않게 무르익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것은 오늘 다루게 될 발표 주제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평가」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학자들이 그 현주소를 예의주시해 온대로 지난 이명박 정부가 만4년 동안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이렇다 할 큰 변화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더 자세히 말해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노력은 지난 만4년 동안 크게 진전된 변화가 없는 상태이며 발전 노력도 별로 한게 없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평가된다.

사실 본 주제에서 다루고자 했던 테마인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다음의 환경변수들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큰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원인은 다음의 3가지 측면에서 집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환경조건들의 급변으로 인해 뜨거운 테마로 부상하기 커녕은 오히려 잠수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2008년에 행정안전부 산하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그 활성화가 다시 불붙는 듯 했으나 금강산 박00 총격사건이 발생해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2009년 하반기에 가서 국제경제가 추락하고 국내 경기가 비상상황을 맞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잠수하게 되었다.

**둘째,** 2009년과 2010년 말까지 북한의 공격으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연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연이어 터졌고 추가로 2011년 12월에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까지 겹치면서 이로 인해 오히려 국력이 국가안보상황에 더 집중해야 하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셋째,** 안보 상황도 문제려니와 솔직히 이명박 정부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도 허약했던 것도 한몫 했다고 평가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사실상 MB정부에서도, 18대 국회에서도, 당사자인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찰관련 학계에서도, 사회제도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누구 하나 무관심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평가는 서론부분에서 미리 종합적 결론을 내린바와 같이 뚜렷한 평가를 내릴 내용이 별로 없다는 점이 아쉽다. 다만 한 가지 언급한다면 다음장에서 소개하게 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 근린자치위원회 내에 자치경찰 소위원회를 발족한 일이다. 이 소위원회는 2011년 8월부터 1개월에 1-2회의 회의를 가지면서 지금까지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과거의 전체내용을 총체적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희미한 희망이다.

## II. 논의의 배경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후보자는 자신의 선거공약 중 경찰분야, 즉 치안정책 분야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 국정과제로 내놓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 2가지 분야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미약하나마 진전되기도 했다. 그 역사적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이명박 정부와 자치경찰제의 인연

- 인수위,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설정( '08.1.25)
  - 기존안을 근간으로 광역단위 기능 보강 및 주민참여 확대방안 포함
  -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 193개 국정과제' 에 포함(' 08.2.5)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도입의무 명시(' 08.2.29)
- B·H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거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확정( '08.5.27)
  - 관련단체 등 사전 의견수렴 후 「자치경찰법」 정부안 입안( '08.7.4)
  - 중앙부처 ·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조회( '08.7.18~7.29)
  -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당정협의 추진( '08.8)
- \*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 일정 조정
-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08.10.7)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분권과제' 로 채택(' 08.12.16)
- 제주자치경찰 운영실태 점검 · 분석( ' 09.5月 · 8月)
-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행정체제개편과 연계 보고( ' 09.7.30)
  - ▷ 법제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 협의 진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2011. 10)

다음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에서 만들어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후 2011년 10월 현재까지 계류 중인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법(안)을 원자료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sup>1)</sup>

현 이명박 정부의 경우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크게 변화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되 광역단위에서 감독권을 갖는 쪽으로 하며, 광역시장/도지사(제주도 제외) 산하에 자치경찰지원관과 치안협력관을 파견해 자문하도록 하는게 크게 달라진 점이다<다음의 그림 1을 참조할 것>.

## 2. MB정부의 자치경찰법(안)

### 1) 자치경찰 모형

MB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은 도입단위를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것이며 대장

---

1) 본 자료는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의 홈 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였으며, 자치경찰에 관심이 큰 학자들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원문 그대로 소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은 자치총경이나 자치경정으로 하되 선택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이다. 주민이 참여하는 의결기구로 시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고, 시군자치구에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국가경찰과 치안협력 및 조정업무를 관장한다는 것이다. 조정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국가경찰관이 치안협력관으로 배치되는 모형이다(신현기·임종현, 2011: 10-14).

<그림 1> 자치경찰제 도입 정부안의 조직 모형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홈페이지(<http://wgmp.mopas.go.kr/>, 검색일자 : 2011. 4. 30)

## 2) 자치경찰 사무

환경, 식품, 위생 등 총 17종의 특별사법경찰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치안업무로는 방법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주민참여 방법활동 지원, 교통 소통 관리, 교통위반 지도단속, 시·군·자치구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의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3) 인사

자치경찰의 신분은 시·군·자치구 소속의 특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청장이 임명한다.

## 4) 본 법안의 특징

광역단위의 기능을 보강했다는 점이다. 시·도치안행정위원회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약, 자치경찰간 분쟁 조정 등 큰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표 1> 제17대 국회 제출 법안과의 비교

구 분	제17대 국회 제출(안)	제18대 국회 제출 예정(안)
도입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시·군·구)/선택적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시·군·구)/선택적 도입</li> </ul>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국가경찰제 골격 유지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영)</li> <li>기초단위 자치경찰대(직속기관) 설치</li> <li>주민참여 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치안행정위원회(심의·의결)</li> <li>시·군·구 지역치안협의회(협의·자문)</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 국가경찰제 골격 유지 (국가·자치경찰 이원적 운영)</li> <li>기초단위 자치경찰대(직속기관) 설치</li> <li>주민참여 기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치안행정위원회(심의·의결)</li> <li>시·군·구 자치경찰운영위원회(심의·의결)</li> </ul> </li> </ul>
사 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국가경찰과 공동사무(협약)</li> <li>17종 특별사법경찰사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국가경찰과 공동사무(협약)</li> <li>17종 특별사법경찰사무</li> </ul>
인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li> <li>자치경찰대장(자치총경·자치경정·자치경감)은 시장등이 임명</li> <li>최초 설치시, 국가경찰을 차상위계급 특별임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치경찰공무원은 특정직 지방공무원</li> <li>자치경찰대장(자치총경·자치경정)은 자치경찰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등이 임명</li> <li>최초 설치시, 국가경찰 차상위계급 및 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특별임용 가능</li> </ul>
광 역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안행정위, 협약 및 분쟁의 조정 등</li> <li>시·도지사, 시정명령 및 감사권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안행정위, 협약 및 분쟁의 조정 등</li> <li>시·도지사, 시정명령 및 감사권 등</li> <li>시·도지사, 자치경찰 통합운영권</li> <li>시·도에 자치경찰 지원·조정을 보좌하는 기구 설치 및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공무원 배치</li> </ul>

출처: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홈페이지(<http://wgmp.mopas.go.kr/>, 검색일자 : 2011. 4. 23).

### Ⅲ.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노력에 대한 분석

#### 1.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

##### 1) 관심 내용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다. 2012년 2월 10일은 만으로 15일 부족한 4년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대통령후보시절 주요 100대 실천 과제들 중 하나로 선정해 발표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전 노무현정부의 기초단위에서

실시하는 모형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델을 전격 수용했었다. 다만 이 당시에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법안과 그 구체화를 위한 모형을 만들어 내는 곳이 행정안전부 소속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이었고, 이 기구를 통해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었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일명 자치경찰법안이 17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원인 중 하나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적지 않은 반대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말하자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측의 경우 기초단위가 아니라 시도지사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어야 힘을 받을 수 있고 그 추진력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행정안전부 소속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단은 일명 「자치경찰지원관」 과 「치안협력관」 을 설치하여 자치경찰대를 운영하게 될 시장·군수·구청장을 재정지원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는 일정 영역을 열어주는 쪽으로 약간 변형된 모델을 새로이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것을 18대 국회에 상정했으나 사실상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못해보고 계류 중으로 남아 있다. 이제 2012년 4월이며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된다.

결국 18대 국회는 2012년 2월 10일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2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십중팔구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정부안으로 만들어진 MB정부에서 만든 자치경찰제법안이 4월 총선 이전 18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고 평가된다. 2012년 4월 이후 새로이 출범하는 19대 국회에서 그리고 2012년 12월에 치뤄질 대선에서 새 대통령후보들은 차기 정부에서 어떤 자치경찰제법안을 그려내고 실천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뜨거운 주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역대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공약은 단골메뉴로 자리잡았었다. 또 하나는 바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 주제였고 2011년에 상당히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변죽만 울리고 오히려 경찰이 더 불리한 형태로 주저앉은 것은 아닌지 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었다.

## 2) 자치경찰제와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

이와는 별도로 이명박 정부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위한 노력의 주요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다음의 법률이었다. 즉 2008년 2월 29일 마침내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3항에 자치경찰제의 도입의무를 명시하게 됐다. 이어서 2008년 5월 27일에는 MB정부의 관계기관간 조정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2008년 7월 4일 「자치경찰법」 정부안이 입안되었으며, 2008년 10월 7일 MB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경찰제가 포함되었다(남재성, 2010: 5; 신현기, 2011: 3-16).

다행인가? 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2010년 4월 27일 소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관한특별법(안)」을 전격 의결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활동 중에 있다. 본 법안에서 우리의 관심거리는 제41조 제2항과 제3항인데 국가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련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였고 이것이 통과되어 2011년 8월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에 자치경찰제 소위원회가 출범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근본적인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신현기, 2011: 3-16).

## 2. 이명박 정부에서 자치경찰제의 잠수 원인 분석

첫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상정했던 정부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한채 17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이견에서 오는 갈등으로 법안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야당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석을 차지했고 시행하고자 하는 법안상의 상호 이견의 폭이 너무 벌어져 있는 관계로 합의를 위한 분위기와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참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나마 자치경찰제를 탄생시켰다. 차후에 이는 많은 비판에 직면했으며 5년 6개월이 지난 오늘날까지 조직 통폐합 등 여러 번의 개편 노력을 통해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큰 노력들은 자치경찰단장의 경무관급 승격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자치경찰대가 통합되어 도지사 직속기구가 되었고 자치경찰단장 산하의 대장이 없어지고 활동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자치경찰기마대까지 출범하여 차분하게 분위기를 쇄신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둘째, 18대 국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2010년 4월 27일 소위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데에서도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2010년 9월에 가서 통과되고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순조로웠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자치경찰제가 다소 진전을 보였을지도 모른다.

원래 이명박 정부는 전국을 시·군·자치구를 합쳐 전국을 70-80여개의 광역시로 만든 후 광역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였으나 마산-창원-진해지역만 통합 광역시(시민 102만명)가 성공하고 나머지는 논의에만 그치고 보류된 상태다. 이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만 통합을 이루게 되었고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킨 바 있다.

셋째, 세계경제가 나빠졌고, 남북한 간의 첨예한 대립이 본격화되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등의 군사적 대결이 대두되었다. MB정부에서 이전 노무현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정부(안)을 중심으로 약간 변경하여 시행하려고 했으나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자치경찰제는 국가적 주요 핵심테마에서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 3. 자동폐기를 앞둔 유기준 의원의 자치경찰제법(안) - 2009년 경찰법개정

한나라당의 유기준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광역단위의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자치경찰제(안)을 제안한바 있었고, 이어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2009년 11월에는 경찰법을 개정하여 의원입법발의를 시도했으나 이것마저도 현재에도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본 법안은 경찰법을 전부개정하여 자치순경부터 자치치안감까지 계급도 바꾸어 시행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국가경찰제를 전면 자치경찰제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이해된다(신현기, 2011: 3-16). 유기준의원의 새로운 자치경찰법(안) 발의(2009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

노무현 참여정부는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경우처럼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시·도 광역시 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었고 이 양자는 17대 국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 있다. 2008년 2월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후 유기준 의원은 두 번째로 2009년 11월 이른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 대표 발의했다. 이 당시 발의자들은 유기준·김영진·신학용·유성엽·박대해·정해걸·이명수·진영·노철래·김욱이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이다(신현기, 2010: 368-369). 한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치안행정에서도 지방분권적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상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며,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행정을 자치경찰이 담당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과 아울러 국가경찰과 함께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경찰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고 각각의 조직 및 소관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가경찰은 대공·정보·마약·테러 등의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강력범죄 사무 등에 한정하도록 하고, 자치경찰은 교통, 생활안전, 지역치안을 포함한 일반범죄수사 등을 담당하되, 이를 시·도 및 시·군·구의 경찰조직에 효과적으로 분장되도록 조정하여 국가 전체의 치안행정 및 민생치안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2)</sup> 이는 총45

2) 자세한 내용은 유기준 의원이 2009년 11월에 의원입법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참조할 것.



조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준 의원의 본 법안도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데 18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100%라고 볼 수 있다.

## IV.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소 위원회 활동

### 1. 자치경찰 소위원회의 발족

#### 1) 기구출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산하 자치경찰소위원회가 2011년 8월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 이는 행정안전부 산하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과는 별도로 출범하여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자치경찰제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2명, 실무위원 3명으로 총 6명으로 출범해 미래 한국 자치경찰제의 기본 그림을 그려내게 된다.

#### 2) 임무

본 위원회는 왜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데 진점이 없었는가 하는 물음으로 출발했다. 그 원인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제 법안이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가? 정당간의 다른 이해 관계는 무엇인가? 창원시와 같은 맘모스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자치경찰 모형은 어떤 것인가? 우리나라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보다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어느 분야가 더 연구 및 보완되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8차례에 걸쳐 세세히 들여다보고 부족한 영역은 연구프로젝트로 발주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3) 과제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추진했던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정부, 여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경찰, 학계, 시민단체에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모형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토대를 구축해 주는 것이 주요과제로

보면 된다.

#### 4) 한시법, 19대 국회출범, 대통령 선거 등 복잡다기

이른바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14년까지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 안에 창원시와 같은 거대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자치경찰모형도 구상해 내야 한다. 이 법안은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들과 2012년 12월에 당선돼 2013년 2월 25일 취임하는 새 대통령 정부와도 겹친다. 이 꼬일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 5) 논의 주제들에 대한 현황

본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논의의 줄기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보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연구는 무엇인가.

둘째,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 및 시행하게 된다면 창원시와 같은 맘모스 기초자치단체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형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를 어떤 형태로 출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셋째, 지금까지 구상되어 온 자치경찰제의 핵심 내용이 특별사법경찰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역시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그 조직, 권한, 범위 등에 대해 보완하고 추가 연구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경찰 분야를 완전히 떼어서 자치경찰이 특별사법경찰업무로 취급해 나가는 일은 가능할 것인가?

넷째, 기존의 추진안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용역들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인가 등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 V. 결어: 19대 국회와 2013 새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환경 예측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되기에는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높다고 본다. 정당간의 이견이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도 기초자치단체냐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냐 등등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절충형을 찾아내는 노력도 다방면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신현기, 2011: 1-10).

첫째, 현 정부의 의지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 본 제도를 실현시키기 위해 뜨거운 테마로 떠

올리게 하는데는 일정한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약 5개월이면 총선이 있고, 내년 연말에는 새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현재로서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요원한 상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개편으로 인해 예를들어 창원시와 같은 광역시가 향후 추가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매우 큰 변수이므로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 만들어 놓은 자치경찰법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그러나 창원시와 같은 거대 맘모스 광역시가 탄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하려고 상정해 놓은 자치경찰제 모형은 또 다시 원점에서 재고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셋째, 특별사법경찰제도 분야를 자치경찰에서 더 집중하여 수행하는 모델을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자치경찰에서 제주도의 경우도 특사경 분야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듯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교통분야를 완전히 가져가서 업무하는 것은 가능한지 아닌지 등에 관한 연구도 진지하게 진행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 일인가?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에 있어서 경찰서까지는 어렵지만 최소한 지구대와 파출소 정도까지를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경찰학 연구관련 학회의 학술회의 등을 통해 제기된 경우도 있었다.

이어서 19대 국회와 2013년 새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부분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정부에서처럼 국회의원 후보자와 대통령 후보자는 일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치안정책 분야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난 후보자들처럼 비슷한 치안정책 테마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논의를 계속할 공산이 크다.

둘째, 국가경찰에서도 광범위한 치안업무 영역을 다 맡기보다는 방법, 교통 등 특사경분야의 업무를 자치경찰에게 넘겨도 좋을 것이란 이해도를 높여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위기 성숙은 자치경찰제 도입에 약소하나마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보, 수사, 경비 등은 국가경찰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자치경찰로부터는 곁에서 친근하게 방법 순찰, 교통정리 등의 특사경 관련 서비스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고의 전환 시대가 다가왔음을 있음을 직시하고 준비해야 해야 함이 옳다.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데 있어서 치안분야의 만능선수가 아니다. 국가경찰이 안해도 될 분야나 영역은 국민을 위한 경찰의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자치경찰에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을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치안 향상 서비스 경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상호·신현기 외 7인. (2006). 「경찰학개론」. 파주: 법문사.
- 신현기. (2004). 「자치경찰론(제1판)」, 서울: 응보출판사.
- 신현기. (2005). 「자치경찰론(개정증보판)」, 서울: 응보출판사.
- 신현기. (2012). 「경찰인사관리론(제3판)」. 파주: 법문사.
- 신현기. (2006). 「비교경찰제도의 이해」, 서울: 응보출판사.
- 신현기. (2006). 「경찰조직론」. 파주: 법문사.
- 신현기 외 8인. (2012). 「비교경찰제도론(제3판)」, 파주: 법문사.
- 신현기. (2007). 「자치경찰론(개정3판)」, 서울: 응보출판사.
- 신현기. (2010). 「경찰학개론」. 파주: 21세기사.
- 신현기. (2010). 「자치경찰론(제4판)」, 부평: 진영사.
- 신현기 외 20인 공저. (2011). 『경찰학개론』. 서울: 우공출판사.
- 이영남·신현기, (2003). 「경찰조직관리론」, 서울: 법문사.
- 이영남·신현기, (2012). 「경찰인사관리론」, 서울: 법문사.

### <논문>

- 강선·신현기. (2009). “UN경찰의 조직과 임무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2권 제2호(2009년 가을/겨울).
- 곽영길·신현기. (2008).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에 관한 역사적 고찰”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1호(2008년 여름).
- 곽영길·신인봉. (2011).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3호(2011년 겨울).
- 곽영길·한진태 (2010). “전의경 직무교육만족도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3권 제1호(2010년 봄/여름).
- 김재주. (2010). “브라질 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3권 제1호(2010년 봄/여름).
- 남재성. (2010).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국가경찰관들의 인식” ,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
- 박억중.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세종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2006.
- 박억중.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정부법(안)과 시·도지사협의회법(안)의 비교연구”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1호(2006년 여름).

- 박역중. (2008). “바람직한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1호(2008년 여름).
- 박역중. (2008). “경찰과 지역사회의 활성화 방안”.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2호(2008년 겨울).
- 박형식. “자치경찰시대의 자치경찰간 수사공조방안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1호(2006년 여름).
- 신현기. (200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교수논총」. 제17호.
- 신현기·김동욱. (2003). “절충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3권 제1호(2003년 여름).
- 신현기. (2004). “이탈리아 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3권 제1호(2004년 여름).
- 신현기·박수래. (2004). “프랑스 자치경찰제도의 특징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3권 제2호(2004년 겨울).
- 신현기. (2006). “미국의 경찰조직체계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3권 제1호(2006년 봄).
- 신현기. (200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의 선발절차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3권 제2호(2006년 가을).
- 신현기. (2007).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2호(2007년 가을).
- 신현기. (2007). “벨기에 자치경찰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4권 제1호(2007년 봄).
- 신현기·안영훈. (2008). “제주자치경찰의 인력확보 대책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1호(2008년 봄).
- 신현기·정길우. (2008). “제주자치경찰의 기구개편과 성과에 관한 고찰”.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2호(2008년 겨울).
- 신현기·강선. (2009). “멕시코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2권 제1호(2009년 여름).
- 신현기·이상열. (2009). “제주자치경찰의 입직·승진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 신현기. (2010). “프랑스 리용(Lyon)시의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3권 제1호(2010년 봄/여름), pp. 151-179.
- 신현기. (2010). “영국경찰제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 한국유럽행정학회보. 제7권 제1호(2010년 여름).
- 신현기. (2010). “제주자치경찰의 개선방향”. 한국자치경찰학회. 제7회 추계학술세미나 자료.
- 신현기. (2011). “경찰시험제도의 개편당위성에 대한 고찰”, 미간행 논문.

- 신현기·임종현. (2011). “자치경찰제의 전국확대실시 가능성에 대한 연구”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4권 제1호.
- 신인봉. (2006).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강호. (2005).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고찰” .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제19호.
- 이상열. (2004).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3권 제2호.
- 이상열·전준석. (2008).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2호.
- 이상열·오종식. (2008).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1호.
- 이영남. (2005). “바람직한 한국적 자치경찰제도의 방향”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4권 제2호.
- 이영남. (2006) “자치경찰시대를 대비한 경찰공무원 선발시험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방안”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1호(2006년 여름).
- 안영훈. (2005). 「유럽형 자치경찰제도 모델분석」.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12.
- 안영훈. (2008).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 설계를 위한 실증적 근거들”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1호(창간호).
- 안영훈. (2009). “관광경찰제 도입에 관한 소고: 서울시를 중심으로” . 2009년 5월 한국자치경찰학회. 춘계학술 세미나 자료의 pp. 11-12.
- 윤상호. (2009). “제주자치경찰제도에 관한 고찰”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2권 제1호(2009년 여름).
- 조성택. (2009). “한국의 자치경찰제 확대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2권 제2호(2009년 가을/겨울).
- 조성택·김동현. (2009).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분석과 전망” . 한국자치경찰학회. 「자치경찰연구」. 제1권 제1호(2008년 여름).
- 전희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제5권 제1호(2006년 여름).
- 해양경찰청·인천대학교. (2009).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해양경찰 중” 장기 발전방안 연구” , 인천, p. 136.
- 행안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2010). 내부회의자료.

#### <인터넷 자료>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infodata/if\\_experienceView11.jsp/](http://www.police.go.kr/infodata/if_experienceView11.jsp/) 검색일 2010.11.15).
- [http://jmp.jeju.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0403&ebcf\\_id](http://jmp.jeju.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0403&ebcf_id)(검색일: 2010. 11.10 검색).
-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홈페이지(<http://wgmp.mopas.go.kr/>, 검색일: 2011. 4. 30).



# 발표 4





#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 향상방안

김 학 범(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문제 및 방법 |               |

## I. 서 론

최근 교정 조직은 다양한 교정 처우에 대한 요구 증가, 교정시설의 민영화, 청소년 범죄의 급증 등 다양한 대내·대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교정조직 구성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정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교정조직이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설 등 물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적자원으로서의 교정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특히 수용자들에게 교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하는 교정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이 가능케 하기 위한 관련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들 요인들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임파워먼트란 권한부여, 능력개발, 가능성 부여, 허락 등의 의미로 규정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권력이나 권위를 준다는 것 혹은 뭔가 이룰 수 있도록 행할 능력을 주는 방법과 관련되어 이해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논의들도 임파워먼트가 단순히 권한위임과 동의어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임파워먼트란 단지 파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여, 구성원이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역량을 조직 전체차원에서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박원우, 2002: 27).

조직의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임파워먼트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많은 학자들이 리더십을 꼽는다(Conger & Kanungo, 1988; Voget & Murell, 1990). 또한 Conger & Kanungo(1988: 471)도 임파워먼트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임파워먼트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리더십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정조직에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이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내재적 과업동기의 증대로 본 Thomas & Velthouse(1990)와 이를 측정하여 그 구성개념 타당성을 입증한 Spreitzer(1995)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수로서는 Bass(1985)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리더십은 기존의 리더십 이론과는 달리 리더가 어떻게 그들의 조직과 사회, 그리고 부하들을 변화시키는가 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 현상을 보전하는 것보다 이를 초월하여 현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이 빠른 변화를 겪고 있을 때 가장 잘 다스려나가고, 거래적 리더십은 안정적인 조직 환경에서 움직이는 조직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으로 밝혀져 양쪽의 리더십이 조직의 생명주기의 서로 다른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 유형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분류한 후, 이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며, 특히 임파워먼트 하위요소 별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정조직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교정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리자의 리더십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 1. 교정공무원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논의

#### 1) 리더십 논의

리더십은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정의하려고 한 사람의 수만큼 많은 정의가 이루어졌고,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Bass(1990)는 리더십을 상황이나 집단 구성원들의 인식과 기대를 구조화, 또는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에 교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Hersey & Blanchard(1982)는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보았다. Bryman(1986)은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 공식적으로 리더의 직위에 임명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백기복, 2005: 15). 일반적으로 리더십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또는 “대인간 영향력의 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즉 학자들의 정의들은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influence process)이라는 부분에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윤지연, 2004: 13).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리더십 특성이론(trait theory)에서 출발하여 보편적 리더십을 탐색하는 행동이론(behavior theory), 그리고 부하 및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으로 전개되어 왔다. 1980년대 들어 조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조직 성공의 핵심요소가 인간의 창의성이나 독창성 등에 의한 경쟁우위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제기 되었다(이성철·김홍, 2008: 936).

이러한 최근의 리더십 이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첫째, 기존의 이론이 리더중심이거나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리더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구성원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관점이 변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에서는 이전의 이론에서 리더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으로 생각되었던 카리스마적 자질이 구성원들의 지각과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와 구성원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도 리더십 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이전의 리더십 이론에 비해 리더십 과정에 있어서 구성원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양 리더십이 구성원의 성과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김동춘·송미선, 2005; 김우식, 2002; 이연승, 2004; 정연국, 1996; 황명원, 1999)에서는 교육기관의 원장이 교직원의 성장욕구를 내적으로 동기화시키며 이를 통해 업무에 대한 유능감 내지 자신감을 갖도록 지지한다고 교사들에 의해 인식될 때, 교육기관 조직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 학교장의 리더십 유형과 조직의 질 개선 및 학교조직 효과성의 향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강경석·강경수, 2007; 권동택, 2003; 김정희, 2007)에서도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박서춘, 2002; 박철진, 2006; 박봉길·전선영, 2006)가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학 분야에서는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하여 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를 연구한 연구결과물들(김병식, 1997; 김세리, 2005)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와 관련 있는 여러 공공조직에 있어서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연구 중 절반 정도가 Bass(1985)의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 자극-과 거래적 리더

십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있다.

변혁적 리더십 연구의 종속변수는 임파워먼트, 조직시민행동, 직무만족, 조직몰입과 증폭효과, 조직효과성, 조직의 질적 관리 개선, 집단 효능감, 집단 자아존중감 및 무사안일 형태 등으로 다양하다. 이렇게 공공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 이창원(1999: 273-286; 2000, 139-160)은 Bass의 변혁적 리더십이론에서 제시한 리더십 유형과 Yukl의 리더십 행동유형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 행태와 리더십 효과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규만·정윤길(2000; 323-341)은 446명의 부산, 경남의 구청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청장의 리더십과 조직공정성 간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한편 김호정(2001: 197-216)은 사기업보다 행정조직을 비교하였고, 이창원·김호정·박희봉(2003: 19-37)은 한국과 뉴질랜드를 비교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찰조직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유경화·신원형(2003: 379-397)의 연구에서는 조직성과와 리더십을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수로 집단 효능감을 사용했다. 또한 황기순·김재득·이창원(2005: 65-90)은 경찰지구대장의 리더십 유형을 대상으로, 이상원(2004: 261-288)은 경찰관서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찰서장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창호(2002)는 독립변수로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소인 상황적 보상과 예외관리, 변혁적 리더십 구성요소인 카리스마, 개별적 고려, 지적자극을 설정하고, 조절변수로 조직공정성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리더만족을 들었으며, 종속변수로 경찰서 조직성과는 민생 치안 자체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경찰조직 성과지표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다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거래적 리더십의 구성요인인 예외관리를 제외하고 모두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전체적으로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러 사회과학 분야 선행연구들에서는 조직효과성 내지 구성원의 역량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이루어져 왔으나, 교정 분야에서는 리더십 관련연구가 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김찬우(2011)는 교정조직의 리더십과 조직문화 그리고 조직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창한(2010)은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여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보호관찰관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교정조직의 효율적인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의 부족은 이 연구의 필요성과 맞물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임파워먼트 논의

임파워먼트는 힘을 갖게 한다는 의미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의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Staples(1990)는 힘(power)이 타인에 의해 부여되는 것(to give)이라기보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얻어내는 것(to gain)으로 해석하면서, 임파워(empower)는 누군가가 힘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얻고(to give), 힘을 발전시키고(to develop),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것(to enable)으로 자기 자신의 주체적 행동을 통해 성취되는 능동적인 의미로 보았다(강철희, 2001: 35-36 재인용). Foy(1994: 14)는 임파워먼트를 조직구성원들이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결정권이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는 동시에 조직이나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임파워먼트란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에 있어 동기부여적 측면으로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삶이나 업무의 중요한 측면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권이나 자기효능감을 가진 것을 인식하고 실제 이를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한민경, 2009: 53).

이러한 임파워먼트 정의를 바탕으로 임파워먼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임파워먼트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omas & Velthouse(1990: 666-681)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하기 위해 내재적 직무수행동기라는 개념을 임파워먼트의 인지적 요소로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그 후 Spreitzer(1995: 1442-1465)는 Thomas & Velthouse(1990)의 심리적 임파워먼트, 즉 개인차원의 임파워먼트 연구를 발전시켰는데 의미,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 등을 그 구성요소로 보고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임파워먼트의 하위차원인 의미,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은 모두 임파워먼트를 설명하는 타당한 개념으로 나타났고, 자아존중감, 정보, 보상, 통제의 위치 등은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는 또한 관리효과성이나 혁신과 같은 조직구조적 차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녀는 임파워먼트가 단순히 권한의 위양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만 파악되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이고 인지적인 변수로서 연속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는 임파워먼트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조직구성원에게 임파워먼트가 형성된다면 조직혁신 및 과업목표달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무력감을 제거하고, 개인의 내재적인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도록 조직의 제도적, 구조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Thomas & Velthouse(1990)는 인지적 요인의 변화에서 임파워먼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내적 직무동기가 부여된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등 임파워먼트된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국내에서 경찰조직을 연구한 이승길(2003: 1)은 임파워 된 경찰관들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인정신을 느끼게 되고 그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긍심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조직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파워먼트와 관련하여 이미 상당수의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분야에 있어서는 교정조직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를 내재적 과업동기의 증대로 본 Thomas & Velthouse(1990)와 이를 측정하여 그 구성개념 타당성을 입증한 Spreitzer(1995)의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즉 임파워먼트란 개인의 내재적인 과업동기 - 역할의 의미(meaningfulness), 능력(competence), 영향력(impact), 자기결정력(self-determination) -을 증진시키고 이렇게 임파워먼트 된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하여 조직구성원들과 상호신뢰를 키워 조직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증대시키는 심리적인 과정이다.

## 2. 변혁적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 1) 변혁적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고취시키며 과거와 단절된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등의 하위요소로 구성된다(Bass: 1985). Graham은 특히 변혁적 리더십의 개별적 배려와 지적 자극을 통해 조직구성원들의 임파워먼트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미혜, 2004).

Bass(1985)는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로서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카리스마는 구성원에게 자신감과 사명감을 즉 도전적인 목표설정으로 구성원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며, 구성원에게 리더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개별적 배려는 구성원의 개인적 욕구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며 사려 깊게 하는 멘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지적 자극은 구성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고 구성원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격려하며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도록 구성원을 유도하는 것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이 3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개념으로서 구성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조직몰입을 가져오게 하고 위기상황이나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유기적 조직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남기민·남기예, 2008: 98). 즉 변혁적 리더십에서 카리스마는 부하들로 하여금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여 리더와 동일시하도록 하면서 난관 극복과 현상 타파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

명함과 동시에 도전적인 목표와 임무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도록 함으로서, 지적자극은 새로운 방법과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함으로서, 개별적 배려는 학습이 능력배양을 통해서 집단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서, 부하들은 결국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효능감이 집단목표 달성을 위한 열성과 도전감을 갖게 될 것이다(이창신, 2006: 31). 이러한 점은 바로 리더십에 의한 임파워먼트 고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와 결부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지적됨은 임파워먼트가 변혁이라는 의미를 이미 내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Bennis와 Nanus(1985)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효과가 임파워먼트라고 하였으며, Yukl(1994)은 리더십의 스타일 중 임파워먼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서 변혁적 리더십을 주장하였다(박원우, 2002: 197-210).

Conger와 Kanungo(1988: 471-482)도 카리스마적 리더의 중요한 특성으로 그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부하들을 임파워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임파워먼트를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데 그 이유는 카리스마적 리더가 제시하는 비전이 대부분 고결하고 성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부하들이 그들 자신의 능력과 권력에 대한 확신이 설 때에만 리더의 비전이 갖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조직 구성원이 임파워(empower)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리더의 구체적인 역할은 높은 수행기대를 시킴으로서 하부 조직에게 확신(confidence)을 표현하고, 하부조직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장려하며, 자율성을 제공하고, 영감 있고 의미 있는 목표설정 등으로 이러한 역할들이 임파워먼트 된 조직 구성원을 형성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구성원들을 임파워먼트 시키는데 있어서 리더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임파워먼트 되기 위해 리더가 갖추어야 할 속성이 상당부분 변혁적 리더십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박원우, 2002: 197-210).

Thomas와 Velthouse(1990: 666-681)는 Conger와 Kanungo(1988)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모델을 정교화시키는 과정과 임파워먼트를 부하들이 인지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임파워먼트 지각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소들을 제시, 그 중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들의 지각에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변혁적 리더십은 과업평가에 있어서도 여러 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변혁적 리더들은 강력한 감정이입의 재능이 있다(Burns, 1978: 20). 변혁적 리더들은 부하들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에 의하여 부하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준다(Bandura, 1989: 122-147). 불가능하게 보이는 과업들을 성취하게 하는 부하들의 고양된 노력과 능력은 바로 그들의 강화된 자기 효능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변혁적 리더는 주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조직의 욕구와 부하들의 욕구를 대변하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적 리더들과 달리 변혁적 리더들은 구성원들 간에 교환되고 협상될 수 없는 가치, 즉 목적 가치에 목표를 둔다. 변혁적 리더들은 그들의 부하들을 한 차원 높은 도덕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나 수단 가치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은 목적 자체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Burns, 1978: 20).

부하들을 임파워시킨다는 것은 부하들을 보는 리더의 시각이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특성을 통하여 영감적이고도 기대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개별 배려와 지적 자극을 통해 부하의 역량강화 및 신뢰성 증진 등을 달성하도록 한다. 또한 부하들은 리더의 모델을 보고 대리 경험을 통해 스스로 리더와 같은 방법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느끼게 되어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다(Avolio & Gibbons, 1988: 225-235). Bandura(1997: 191-215)는 심리적 차원에서 다른 사람을 임파워시키는 수단으로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긍정적으로 감정적 지원을 해주며, 둘째는 격려의 말과 긍정적인 권유를 한다. 셋째는 성공적인 사람을 모델로 하며, 넷째는 실제로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숙달되게 함으로써 구성원을 임파워 시킨다.

Randolph(1995: 19-20)는 1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 리더가 종업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자극과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임파워먼트를 증대시킨다고 밝혀냈고, Susan(1992)은 기업체 384명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부하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하였고, John(1995: 411-450)은 군조직(18개 조직 259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개인의 임파워먼트와 생산성, 조직몰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바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도 경찰서장과 중간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소인 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 한바 있으며(김학범, 2011: 46) 경찰서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임준태, 김상호, 2008: 965). 그리고 유아교사가 지각한 원장의 리더십이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김정희(2007)의 연구에서는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임파워먼트 개발에 가장 높은 긍정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정조직내의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유추해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청되는 바이다.



## 2) 거래적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와의 관계

거래적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사이에 일어나는 교환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리더와 부하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적이고 교환관계적인 과정이므로 부하와의 교환관계에 입각하여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부하에게 약속한 보상을 제공한다(Bass, 1985). 거래적 유형의 상사는 내재적 동기요인보다 외재적 동기요인을 이용하여 부하를 이끌어 가지만 그들에게 요구되는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였을 때에는 약속했던 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부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변혁적 리더십이 강한 사명감과 아울러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감과 존중감을 통한 인격적 관계를 중시하는 반면에 거래적 리더십은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규칙이나 보상, 규제 및 처벌 등에 근간을 둔다(Yammarino, et al, 1997).

거래적 리더십으로서 조건적 보상은 부하와의 약속을 이행하여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이나 집단에 공정한 보상지급 풍토를 조성할 것이므로, 부하들은 계약에 따라 노력하는 만큼 공정하게 지급받게 되어, 한편 자신이 그 조직에 소속되어 있음을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다른 한편 조직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을 어느 정도 갖게 될 것이다(이창신, 2006: 31).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임파워먼트를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Bass(1985)는 LMX(leader member exchange) 이론과 경로-목표(Path-goal)이론 등을 거래적 리더십 차원에서 기술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리더-구성원간의 사회교환 관계 행위는 상호 거래에 의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연구 사례를 보면 Keller와 Dansereau(1995: 127-146)는 사회교환 관계적 입장에서 리더십과 임파워먼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는 임파워먼트를 부하들의 통제력에 대한 지각 정도로 정의하였고, 리더는 내집단(in-group)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하들에게 자아가치(self-worth)를 높이도록 의사결정에 있어 협상의 범위(negotiation latitude)등을 크게 허용해 줌으로써 부하에 대한 투자 차원에서의 거래를 한다고 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부하는 자신이 통제력을 높게 지각함과 아울러 리더가 선호하는 것에 맞추어 충성과 헌신, 성과를 달성하여,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된다고 하였다. 반면 외집단(out-group)에 속한 부하들에게는 공식적인 관계차원에서 리더십이 아닌 관리행위만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협상의 범위(negotiation latitude)란 리더가 부하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작업라인을 수정할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아가치(self-worth)를 지원하는 것은 리더들이 자신들의 부하에 대한 능력을 신임하고 부하들의 기본욕구에 관심을 두며, 부하들의 행위와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부하들이 정서적으로 고양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더가 교환관점에서 자아가치의 지원이나 협상의 범위를 지원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는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서도 직무나 조직생활에서 구성원이 임파워먼트 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예외적 관리는 대부분 부하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어 왔지만, Bryman, Stephane, Campo(1996: 353-370)는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리더십 상에서 포함되어야 할 요인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기준변수를 임파워먼트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리더에 의해 적극적인 예외 관리도 구성원의 직무나 자신의 역할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패션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소 중 자신감에 대하여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모든 요소가, 자율성, 중요성, 영향력에 있어서는 조건적 보상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고(이성철·김홍, 2008: 941).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에 있어서는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바 있다(김학범, 2011: 46). 거래적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조직에서 더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조직에 비해 안정적 구조를 가진 교정조직에서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 Ⅲ. 연구문제 및 방법

####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사의 리더십 유형에 대한 인식이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통해 리더십 유형이 부하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에 대한 교정공무원의 인식이 종속변수인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고자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선행연구에서의 이론적 준거 틀과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계된 연구 모형을 바탕으로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조직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리더십 유형으로는 내재적 동기 요인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는 변혁적 리더십과 외재적 동기요인을 통하여 조직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는 거래적 리더십이 있으며,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리더십이 발휘될수록 임파워먼트가 높게 지각될 것이라는 가설 1과 가설 2를 설정하였다.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추가적 노력, 상사에 대한 만족, 상사의 유효성, 성과차원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들의 리더에 대한 만족과 리더에 대한 유효성의 지각에 대한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증대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가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이라는 것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연구에서도 기준변수를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로 설정하여 거래적 리더십보다는 변혁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설3을 설정한다.

가설1> 교정조직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임파워먼트에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2> 교정조직 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은 부하의 임파워먼트에 정의 관계를 가질 것이다.

가설3> 교정조직 관리자의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임파워먼트에 대하여 거래적 리더십보다 더 영향력이 높을 것이다.

## 2. 연구방법 및 변인측정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의 교정조직에 속해 있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설문지 중 분석자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242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독립변수로는 교정조직 상사의 리더십 유형을 선정하였고, 그 유형으로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였다. 즉 연구의 독립변수는 교정조직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며, Bass(1985)의 정의에 입각하여 리더십 유형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Bass(1985)는 거래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를 설정하고 변혁적 리더십을 측정하는 요인으로 카리스마,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Bass(1985)가 개발한 설문지(MQL) Form-5를 바탕으로 하여 한민경(2009)와 김학범(2009)을 참고하였고, 교정조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은 카리스마 4문항, 개별적 배려 4문항, 지적 자극 4문항, 조건적 보상 4문항, 예외관리 4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종속변수로는 임파워먼트를 선정하였다. Thomas & Velthouse는 임파워먼트를 하위개념(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으로 정교화시켰고, Spreitzer(1995)가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위와 같은 4개의 하위요인을 가지고 측정하도록 한다. 즉 Spreitzer(1995)를 바탕으로 하여 이성철·김홍(2008) 등을 참조하여 교정 조직에 맞게 보완하였다. 종속변수인 임파워먼트는 의미성 3문항, 능력 3문항, 자기결정력 3문항, 영향력 3문항으로 총 12문항이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측정변수의 신뢰성 분석

측정 변인들간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각 대부분의 변수에서 0.7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그 내용은 <표4-1>과 같다. 우선 종속변수의 Cronbach  $\alpha$ 의 경우 의미성 0.927, 능력 0.902, 자기결정력 0.902, 영향력 0.931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독립변수의 Cronbach  $\alpha$ 의 경우에도 조건적 보상 0.875, 예외적 관리 0.758, 카리스마 0.935, 개별적 배려 0.914, 지적 자극 0.936으로 종속변수와 같이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4-1>신뢰도의 검증

항목	항목수	Cronbach $\alpha$
조건적 보상	4	0.875
예외적 관리	4	0.758
카리스마	4	0.935
개별적 배려	4	0.914
지적 자극	4	0.936
의미성	3	0.927
능력	3	0.902
자기결정력	3	0.902
영향력	3	0.931

###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연령은 40-49세가 93

명(42.1%)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 73명(33.0%), 50-59세 39명(17.6%), 20-29세 16명(7.2%)의 순이다. 성별을 보면 남자가 158명(71.8%) 여자가 62명(28.2%)로 여자 보다 남자의 응답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138명(62.4%), 고졸이 41명(18.6%) 전문대졸이 29명(13.1%), 대학원 13명(5.2%) 순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은 대졸이 가장 많았다. 근무년수를 보면 5년 미만인 59명(26.8%)로 가장 많았고 5-10년 51명(23.2%), 21-25년(14.5%), 11-15년 31명(14.1%), 16-20년(9.5%), 26-30년 16명(7.3%), 31년 이상 10명(4.5%)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위에 대한 응답으로는 6급이 66명(30.6%), 8급 59명(27.3%), 7급 49명(22.7%), 9급 41명(19.0%), 5급 1명(0.5%)이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6급의 직위에 5년 미만의 근무년수를 가지고 있으며, 대졸의 학력을 가진 40-49세 남자의 응답자가 일반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표4-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퍼센트
연령	20~29세	16	7.2
	30~39세	73	33.0
	40~49세	93	42.1
	50~59세	39	17.6
성별	남자	158	71.8
	여자	62	28.2
학력	고졸	41	18.6
	전문대졸	29	13.1
	대졸	138	62.4
	대학원(석사)	13	5.9
근무년수	5년미만	59	26.8
	5~10년	51	23.2
	11~15년	31	14.1
	16~20년	21	9.5
	21~25년	32	14.5
	26~30년	16	7.3
	31년이상	10	4.5
직위	9급	41	19.0
	8급	59	27.3
	7급	49	22.7
	6급	66	30.6
	5급	1	0.5

### 3. 자료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표4-3>에서 제시하였다.

<표4-3> 기술통계량

	평균	표준편차
조건적 보상	2.88	0.782
예외적 관리	3.09	0.683
거래적 리더십	2.99	0.505
카리스마	2.93	0.852
개별적 배려	2.97	0.810
지적 자극	2.93	0.893
변혁적 리더십	2.95	0.801
의미성	3.22	1.009
능력	3.36	0.872
자기결정력	2.94	0.895
영향력	2.73	0.929
임파워먼트	3.07	0.742

분석결과 조건적 보상, 예외적 보상, 거래적 리더십, 카리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변혁적 리더십, 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 임파워먼트는 모두 평균에 가깝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리더십 유형과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관계

리더십 유형과 임파워먼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표4-4>와 같다.

리더십 유형의 하위 변인 중 예외적 관리는 임파워먼트의 하위 변인 중 능력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반면, 나머지 하위 변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리더십 유형의 나머지 하위 변인 들은 모두 임파워먼트의 하위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4>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분석결과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	카리스 스마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의미성	능력	자기결 정력	영향력
조건적 보상									
예외적 관리	-.053								
카리스 스마	.651***	-.024							
개별적 배려	.778***	-.099	.792***						
지적 자극	.737***	-.066	.793***	.898***					
의미성	.400***	.094	.438***	.390***	.374***				
능력	.242***	.162*	.246***	.200**	.207**	.663***			
자기결 정력	.473***	.066	.437***	.475***	.459***	.436***	.523***		
영향력	.559***	-.003	.445***	.544***	.533***	.452***	.374***	.658***	

## 5.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표4-5>는 독립변수인 거래적 리더십 유형과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첫째, 의미성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은 F값이 20.645(p<0.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16.4%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F값이 17.667(p<0.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19.9%이다.

의미성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조건적 보상(

=0.394,  $P<0.001$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조건적 보상이 증가할수록 의미성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카리스마( $\beta=0.349$ ,  $P<0.01$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카리스마가 증가할수록 의미성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능력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은 F값이 9.034( $p<0.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7.9%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F값이 4.565( $p<0.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6.0%이다.

능력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조건적 보상( $\beta=0.228$ ,  $P<0.01$ )과 예외적 관리( $\beta=0.176$ ,  $P<0.01$ ) 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조건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가 증가할수록 능력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능력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결정력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은 F값이 29.763( $p<0.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22%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F값이 22.904( $p<0.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24.3%이다.

자기결정력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조건적 보상( $\beta=0.465$ ,  $P<0.001$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조건적 보상이 증가할수록 자기결정력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자기결정력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영향력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은 F값이 45.887( $p<0.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30.4%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F값이 31.689( $p<0.001$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30.9%이다.

영향력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조건적 보상( $\beta=0.552$ ,  $P<0.001$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조건적 보상이 증가할수록 능력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개별적 배려( $\beta=0.327$ ,  $P<0.05$ )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별적 배려가 증가할수록 영향력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임파워먼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은 F값이 39.508(p<0.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27.5%이다. 변혁적 리더십은 F값이 28.294(p<0.001)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28.7%이다.

임파워먼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조건적 보상(=0.517, P<0.001)과 예외적 관리( $\beta=0.124$ , P<0.05) 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조건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가 증가할수록 임파워먼트 전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카리스마( $\beta=0.214$ , P<0.05)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카리스마가 증가할수록 임파워먼트 전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5> 거래적,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		임파워먼트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거래 적 리더 십	조건적 보상	0.507	0.394 ***	0.254	0.228 **	0.531	0.465 ***	0.659	0.552 ***	0.485	0.517 ***
	예외적 관리	0.173	0.118	0.224	0.176 **	0.123	0.094	0.036	0.026	0.133	0.124 *
상수		1.232**		1.947***		1.033**		0.709*		1.260***	
R <sup>2</sup>		0.164		0.079		0.220		0.304		0.275	
F 값		20.645***		9.034***		29.763***		45.887***		39.508***	
변혁 적 리더 십	카리스 마	0.415	0.349* *	0.206	0.202	0.142	0.134	-0.00 3	-0.003	0.187	0.214 *
	개별적 배려	0.179	0.143	0.021	0.020	0.305	0.276	0.376	0.327 *	0.237	0.260
	지적 자극	-0.033	-0.029	0.031	0.032	0.110	0.110	0.255	0.245	0.078	0.094
상수		1.568***		2.604***		1.300***		0.870**		1.592***	
R <sup>2</sup>		0.199		0.060		0.243		0.309		0.287	
F 값		17.667***		4.565**		22.904***		31.689***		28.294***	

\*p<0.05, \*\*p<0.01, \*\*\*p<0.001

## 6.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표4-6>은 독립변수인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F값이 47.166(p<0.001)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회귀모델에 적합하였으며 설명력은 56.1%이다.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래적 리더십( $\beta=0.248$ , P<0.001)과 변혁적 리더십( $\beta=0.386$ , P<0.001) 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4-6> 리더십 유형에 따른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	
	b	
거래적 리더십	0.359	0.248***
변혁적 리더십	0.354	0.386***
상수	0.954***	
R <sup>2</sup>	0.561	
F 값	47.166***	

\*p<0.05, \*\*p<0.01, \*\*\*p<0.001

## 7. 분석결과의 논의

이 연구결과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 요소 중 조건적 보상이 모든 임파워먼트 하위요소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조직을 대상으로 원감의 리더십이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이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래적 리더십은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한민경, 2009: 61)와 배치되는 것이며, 패션 기업 팀장의 리더십과 팀원의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팀장의 거래적 리더십 중 조건적 보상은 임파워먼트의 모든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고한 이성철·김홍(2008)의 연구 결과, 거래적 리더십 중 조건적 보상이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부정민·권순용, 2009: 41), 경찰조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학범, 2009: 138)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비교적 안정적인 조직에서 더 유용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래적 리더십의 특성상 한국 교정조직은 타 조직에 비해 안정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선행연구 중 김학범(2009)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 경찰 조직과 교정 조직이 유사한 조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조건적 보상은 보상의 크기와 지급방법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 즉 법적, 규범적 제도에 따라 리더십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조건적 보상은 교정 공무원의 임파워먼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보상지급에 있어 재량의 폭을 넓혀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예외적 관리가 능력 임파워먼트와 전체 임파워먼트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예외적 관리는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부정민·권순용, 2009)를 비롯한 기존의 연구들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그 하위요소인 조건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건적 보상 측면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외적 관리 측면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수많은 선행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소가 임파워먼트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의미성 임파워먼트에 카리스마, 영향력 임파워먼트에 개별적 배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점은 교정 조직 관리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함에 있어서 일률적인 리더십 유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 리더십 유형을 발휘하는 것이 교정 공무원의 임파워먼트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변혁적 리더십에 있어서도 의미성에 있어서와 달리 영향력에 있어서는 개별적 배려가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별적 배려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공조직에 있어 변혁적 리더십 요소와 임파워먼트 하위요소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김학범, 2009; 임준태, 김상호, 2008; 조성제, 2004; 이성철, 김홍, 2008) 등과 차이가 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추후 조직특성 변수도 함께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전체 리더십 유형과 전체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선행연구(김학범, 2009; 조성제, 2004) 등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러한 점은 이 연구 결과, 한국 교정조직에 있어서도 변혁적 리더십이 유용하게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변혁적 리더십이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된 유기적 구조에서 보다 효과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정조직내의 상호 존중과 배려, 자율과 책임정신을 강조하는 교정문화 개선과 인간중심의 리더십 강조 등으로 과거에 비해 유연해진 교정 조직 내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한국교정조직에서도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V. 결 론

이 연구는 Bass(1985)가 정의한 리더십 유형과 Spreitzer(1995)의 임파워먼트 모형을 바탕으로 교정공무원에게 설문조사하여, 어떠한 리더십 유형이 교정공무원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실증적인 자료분석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거래적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조건적 보상은 임파워먼트의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것으로 조건적 보상이 증가할수록 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의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예외적 관리는 임파워먼트의 하위척도 중 능력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카리스마는 의미성 임파워먼트에, 개별적 배려는 영향력 임파워먼트에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더십 유형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분석 결과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근거한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교정조직에서 관리자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들 요소와 임파워먼트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교정조직 구성원을 임파워먼트하는데 관리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정 조직의 관리자가 부하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역할 모델이 되거나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하는 등 적절하게 리더십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연구결과 선행연구와 같이 변혁적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교정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차원에서 임파워먼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관리자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카리스마적 기질과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 등의 변혁적 리더십을 지닌 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Bass(1985)는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집단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키워주는 리더십임을 강

조하며, 특히 변혁적 리더십을 보이는 지도자가 각 개인 구성원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이 행동이 임파워먼트를 지지하는 핵심요소임을 강조하였다(한민경, 2009: 61).

이 연구에서와 같이 실증적으로 교정조직에서 변혁적 리더십의 효과가 나타난 것은 새로운 환경 변화가 변혁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지하고, 교정조직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효과적인 변혁적 행정이 모형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한국교정 조직에서는 거래적 리더십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 하는 민간조직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교정조직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거래적 리더십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정조직에서는 변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거래적 리더십 요소 중 조건적 보상과 예외적 관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에 대해 욕구를 가지는 내적 동기나, 자신의 업무가 자신이 목표한 기준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하는 내적직무동기를 유발 시키지는 못하지만 문제에 봉착 시 상관의 도움 없이 부하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능력을 유발시킬 수 있다. 즉 변혁적 리더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래적 리더십도 적절히 사용하면 부하들의 임파워먼트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교정조직에서 실시하는 각종 포상제도를 보강함을 통해 관리자의 지휘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지휘관의 리더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교정분야에서 관리자의 리더십과 교정 공무원의 임파워먼트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까닭에 타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구를 기초 자료로서 교정조직에 맞게끔 수정·보완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타 조직과 교정조직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도구를 바탕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될 것이다.

둘째,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조직특성, 직무특성, 개인 특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조직 특성 중 리더십 유형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추후 다른 여러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교정 임파워먼트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교정조직의 리더십 유형과 임파워먼트 간의 관계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정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분야에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강경석·강경수. (2007),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교사임파워먼트, 팔로워십, 학교장 신뢰 및 학교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 「한국교육」, 34(3): 75-101.
- 강철희. (2001),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 영향요인 및 임파워먼트 제고 과정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과 임파워먼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및 Workshop, 35-61.
- 권동택. (2003), “학교조직의 질 관리를 위한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1(1): 145-167.
- 김동춘·손미선. (2005), “유치원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291-310.
- 김미혜. (2004), “임파워먼트의 매개성과 조절설에 관한 탐색-사회복지기관내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있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병식. (1997), “리더십 유형과 근로자의 임파워먼트, 몰입, 그리고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세리. (2005), “외식업의 리더십, 임파워먼트와 조직유효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우식. (2002), “유치원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의 직무성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희. (2007), “원장의 리더십과 유아교사의 임파워먼트,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개인 및 조직특성 중재효과와 임파워먼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찬우. (2011), “리더십, 조직문화,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김학범. (2011), “경찰관리자의 리더십 유형과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경찰서장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7(4): 27-50.
- \_\_\_\_\_. (2009), “경찰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유형과 부하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김호정. (2001),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공, 사조직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35(2): 197-216.
- 남기민·남기에. (2008), “사회복지 조직 최고관리층의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효과성 간의 관계 -사회복지사 임파워먼트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3): 95-128.

- 박봉길·전선영. (2006), “사회복지실천에서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4): 341-369.
- 박서춘. (2002), “사회복지관 관장의 리더십 유형이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사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원우. (2002), 「임파워먼트 실천매뉴얼」, Sigma Consulting Group.
- 박철진. (2006),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의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백기복. (2005), 「리더십리뷰: 이론과 실제」, 창민사.
- 부정민·권순용. (2009), “보육교사가 지각한 시설장의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23-48.
- 유경화·신원형. (2003), “경찰조직에서 리더십 유형과 객관적 조직 성과간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37(3): 379-397.
- 윤지연. (2004), “패밀리레스토랑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유형이 업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규만·정윤길. (2000), “상사의 리더십 행동과 조직공정성 및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4(4): 323-341.
- 이상원. (2004), “경찰관서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7: 261-288.
- 이성철·김홍. (2008), “거래적·변혁적 리더십이 팀 임파워먼트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6): 936-946.
- 이승길. (2003), “경찰공무원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이연승. (2004), “교사가 인식하는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의 관계-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8(4): 1-27.
- 이창신. (2006),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집단자아존중감과 무사안일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2): 25-52.
- 이창원. (1999),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 행태와 그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행정학보」, 33(3): 273-286.
- \_\_\_\_\_. (2000),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 단체장의 리더십 행태와 그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34(2): 139-160.
- 이창원·김호정·박희봉. (2003),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변혁적 리더십과 리더십 효과성: 한국과 뉴질랜드 단체장들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37(1): 19-37.
- 이창한. (2010), “보호관찰관의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교정연구」, 48: 133-158.
- 임준태·김상호. (2008), “변혁적 리더십이 경찰공무원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

- 정논집」, 20(3): 951-974.
- 정연국. (1996), “유치원 교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제적 연구-유치원 원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 정창호. (2002), “경찰서장 리더십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거래적·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조성제. (2004),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최충식·김정원·안종태. (2006),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임파워먼트 및 조직 시민행동의 다차원 관계: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검증,”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99-330.
- 한민경. (2009), “유치원 교사가 지각한 원감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교사 임파워먼트 및 유치원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9(3): 49-71.
- 황기순·김재득·이창원(2005), “경찰지구대장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지구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9(2): 65-90.
- 황명원. (1999), “교사가 지각하는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리더십 유형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Avolio, B. J. & Gibbons, T. C. (1988), Developing transformational leader: A life span approach, in Conger, J. A., Kanungo, R. N., & Associates(eds.), *Charismatic Leadership: The elusive factor i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40-77,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 44: 1175-1184.
- \_\_\_\_\_. (199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American Psychologist*, 84: 191-215.
- Bass, B. M. (1985), *Leadership and Performance beyond Expectation*. New York : Free Press
- Bass, B. M. (1990), “From transactional t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Bryman, A., Stephens, M. & Compo, C. (1996), “The Impotence of Context :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Study of Leadership,” *Leadership Quarterly*, 7: 353~370.
- Burns, J. M. (1978), *Leadership*, New York: Haper & Row.
- Conger, J. A & Kanungo, R. N. (1988), “The Empowerment Process : Integrating The Theory and Practi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71-482.
- John, M. R. (1995),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its Role in Empowerment productivity and commitment to quality*,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Phd.
- Keller, T. & Dansereau, F. (1995), “Leadership and Empowerment: A social exchange



- perspective,” *Human relation*, 48: 127-146.
- learning to share the vision,” *Organizational Dynamics*, 18(3): 19-31.
- Randolph, W. A. (1995), “Navigating the journey to Empowerment,” *Organizational Dynamics*, 22(4): 19-32.
- Spreitzer, G. M. (1995), “Psychological Empowerment in the work Place : Dimensions,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5): 1442-1465.
- Susan, W. G. (1992), *Feeling of empowerment in relation to leadership approach/transformation leadership*,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hd.
- Thomas, K. W. & Velthous, B. A. B. (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666-681.
- Vogt, J. F. and Murrell, K. L. (1990), *Empowerment in Organization: How to Spark Exceptional Performance*, San Die, CA: University Associates, Inc.
- Yammarino, F. J., Dubinsky, A. J. Comer, L. B. & Jolson, M A. (1997) “Woman and transformation and contingent reward leadership: Amultiple-level-of-analysis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0(1): 205-221.





# 발표 5



# 이명박 정부의 치안정책 현황 및 과제

대구예술대학교  
박 주 상

## CONTENTS

제1장 서론

제2장 최근 치안환경의 변화

제3장 2011년 치안정책의 현황

제4장 향후 치안정책의 과제

## 1. 연구의 필요성

- ◎ 한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짧은 역사에 비하여 양적 성장과 외형이 괄목할 만큼 발전
- ◎ 하지만, 21세기 유망 산업이라는 민간경비업의 외형적 성장 이면의 실체를 살펴보면, 몇몇 업체를 제외한 영세성, 업체간의 과다경쟁, 인적자원의 자질 문제, 높은 이직률 등의 질적 문제가 내재
- ◎ 이와 같은 최근 민간경비 산업의 환경은 서로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심화 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고, 또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
- ◎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양적 발전과 함께 질적인 발전도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객지향적인 마케팅적 접근이 필요

## II. 최근 치안환경의 변화

## II. 최근 치안환경의 변화

### 1. 정치, 외교 환경의 변화성

- 중국 및 인도 등 잠재적 강대국들의 성장
- G20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관리체제로 부상
-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의 확산
- 9.11사태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 북한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돌입
- 한미 FTA 11월 22일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 무상급식 관련하여 10.26 재보선

## II. 최근 치안환경의 변화

### 2. 경제 환경의 변화

- 유럽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 악화 등

### 3. 인구의 변화

-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
- 1인 가구 및 자살율의 급증
-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 II. 최근 치안환경의 변화

### 4. 사회, 문화 환경의 변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의 증가: 도가니 등
-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소통방식의 변화
- 집회시위 이슈의 변화
- 개인정보 보호
- 교통 환경의 변화
-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 반값 등록금 추진 논란

## 2. 경제 환경의 변화

- 중국 및 인도 등 잠재적 강대국들의 성장
- G20 등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관리체제로 부상
- 재스민 혁명(Jasmine Revolution)의 확산
- 9.11사태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 북한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돌입
- 한미 FTA 11월 22일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
- 무상급식 관련하여 10.26 재보선



### Ⅲ. 2011년 치안정책 현황

#### Ⅲ. 2011년 치안정책 현황

1. 범죄와 사고로부터 서민생활 안전 확보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 범질서 확립

3. 확고한 사회 안정 유지

4. 국민우선의 공감치안 실천

5. 소통과 화합을 통한 합리적 조직관리

## IV. 향후 치안정책의 과제

### IV. 향후 치안정책의 과제

1. 치안서비스의 확대 요구
2.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3. 강력 범죄의 증가
4. 서민 대상 범죄의 증가
5. 민간경비와의 효율적 협력방안

#### IV. 향후 치안정책의 과제

6. 총선, 대선에 따른 안보위해 활동의 증가

7.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8. 경찰 내부 역량의 강화

9. 수사권 현실화

10.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감사합니다**





# 발표 6



# 치안행정의 연구윤리

박동균(한국치안행정학회 회장, 대구한의대)

1

## 1.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

연구윤리란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과정에서 책임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을 말한다.

- 연구내용의 윤리 + 연구절차의 윤리

\* 핵심 : 진실성(integrity)

2

## 2. 연구진실성을 위한 기본자세

1.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가 없이 정직하고, 충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정직은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의 하나이다.
2. 연구자는 항상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연구를 수행했는지" 를 물어야 한다. - 부주의, 무능력, 자기기만을 배제하여야 한다.
3. 논문저자 배정, 이해충돌 여부의 명시, 지적 재산과 데이터 소유권의 배분, 연구비 집행 등 치밀한 계획과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 3. 표절의 의미

- 1) 개념 :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 2) 효과 : 적절한 인용(quotation), 말바꿔쓰기(paraphrasing) 과 달리 윤리 · 의무 · 기준위반. 일정한 경우 위법성 구성
- 3) 대상 : '타인의 아이디어' 와 '타인의 저작물'
- 4) 처벌 : 일정한 강제성 규범 · 기준 위반시, 학칙 등에 의거하여 처벌 · 제재 가능성 있음
- 5) 책임 : 영리행위 등 일정요건 구성시, 저작권법 위반가능 (이 경우, 손해배상 · 형사소추 등 절차 진행 가능)

4



## 4. 표절의 유형

- 1) 축약(verbatim) : 작성문에 인용구 없이 원문 그대로 인용, 또는 축약 표현하되 주요 단어 그대로 인용 → 표절
- 2) 개작(rewriting) : 원문 주위에 타 문장을 붙이고 원문 일부 첨삭, 변형 등 → 표절
- 3) 인용(quotation) : 원전 출처 등 밝히고, “ ”를 한 후 인용 부분을 문장 내 표기 → 적정 사용시 표절 아님
- 4) 말바꿔 쓰기(paraphrasing) 표절 :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저작물을 말바꿔 쓰기를 한 경우를 말한다.  
-> 타인의 글을 요약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  
→ 일정기준 일탈(=과다의역) 시 표절이 되므로, 작성 주의 [의역자의 해석, 부연설명이 주가 되어야 하며, 의역문에 원문표현의 상당한 부분(30% 이상 등) 있으면] → 표절

5

## 5. 기타 표절 사례 / 기준

- 1) 인용(quoting) 과다 : 작성 문헌 1/20이상이 인용구 “표절” → 외국의 이공계 논문에 일부 적용 (김형순 교수 주장)
  - 2) 자기 표절 : 작성 문헌을 2개소 이상 게재시, 유사성 정도 → 대조 문헌 간에 세계전기전자학회(IEEE)는 25% 이상, 세계컴퓨터협회(ACM)는 70% 이상 동일시 → “자기표절”
  - 3) 원문과 6개 단어 이상 연속 동일 : → “표절”  
→ 미국 일부 기준. 서울대 2008 연구 시안/연구지침
  - 4)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발췌 : → “표절”  
→ 서울대 2008 연구지침
- 올바른 인용 :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이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6

## 6. 중복게재란 무엇인가 ?

중복게재란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연구윤리 문제”

- 자기표절, 이중게재, 논문 쪼개기, 논문 덧붙이기, 등 여러 가지 용어를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학술지 편집 책임자의 허락 없이 동일논문 또는 가설, 자료, 토론, 논점,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 7. 중복(이중)게재의 원인과 해결

원인 : 연구업적을 부풀리려는 욕망

문제점 : 자원낭비, 실험결과의 왜곡, 저작권 침범 보도기사

대책 : 예방 - 학교,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수시로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

→ 한국치안행정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8

## 8. 중복(이중)게재 관련 유의사항

1. 박사학위 논문을 추후 일부 수정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  
-> 반드시 박사논문을 수정한 것임을 표기해야 함
2. 학회지 발표논문을 학회지가 아닌 다른 대중적인 잡지나  
신문 등에 칼럼형태로 발표한 경우 -> 표절이 아님
3. 학술대회 및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는? 표기해야 함, 표절 아님
4.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우, 이론적 배경이  
유사한 경우는 어떠한가? 인용에 신중을 기하고,  
표절의혹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요구
5. 연구보고서를 학술지에 수정 게재하는 경우? 이 사실을  
표기해야 함. 연구비 지원기관도 표시해야 함

9

## 9. 저자 표기

부당한 저자의 유형

- 선물저자(공짜저자, 명예저자라고도 함)
- 유령저자 :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도 제외
- 교환저자
- 도용저자 : 논문의 채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명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경우

\* 저자표기의 핵심 : 진실성(integrity) : 연구의 공헌도에  
따라 사전에 배정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10

## 10. 연수진실성위원회

한국치안행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 교육(부정행위 방지 + '좋은 연구' 하기)
- 문제발생시 조사 및 조치

\* 바람직한 연구활동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

- > 대학에 '연구진실성위원회' 를 설치
- >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연구윤리론> 과목 설치

11

## 참 고 문 헌

- 2011 연구윤리 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교재, 대교협
-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연수자료(2011.8. 23)
-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한국연구재단
- 좋은 연구 홈 페이지 [www.grp.or.kr](http://www.grp.or.kr)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해설서, 2007.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연구윤리지침, 2010.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 싱가포르 선언문 홈 페이지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지침, 2009.

12

# Memo

---

# Memo

---

# Memo

---

# Memo

---



#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년 동계학술세미나

---

2012년 2월 7일 인쇄

2012년 2월 10일 발행

---

발행인 : 박동균

발행처 : 한국치안행정학회

편집인 : 한국치안행정학회 편집위원회

전화 : 054)479-1353 / 전송 : 054)479-1359

인쇄처 : 한솔기획인쇄

전화 : 053)422-1828 / 전송 : 053)423-1828

---